

목 차

IV. 복 권 기 금(지출)

(1) 지방자치단체지원 (5331-302).....	3
(2)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 (5332-303).....	8
(3) 기금관리비 (3578-201).....	13
(4) 복권사업비 (5243-301).....	17
(5) 사행산업 중독예방 부담금 (5247-300).....	22
(6)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8910-890).....	26
(7)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 (8911-891).....	31
(8) 근로복지진흥기금 전출 (8912-892).....	36
(9) 주택도시기금 전출 (8913-893).....	41
(10)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전출 (8914-894).....	47
(11) 보훈기금(국가유공자지원자금계정) 전출 (8916-896).....	51
(12) 보훈기금(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계정) 전출 (8916-897).....	56
(13) 양성평등기금 전출 (8917-897).....	61
(14)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8918-898).....	65
(15) 청소년육성기금 전출 (8919-899).....	69
(16) 국가유산보호기금 전출 (8920-890).....	73
(17) 응급의료기금 전출 (8923-891).....	78
(18) 기후대응기금 전출 (8924-889).....	82
(19) 영화발전기금 전출 (8925-841).....	88
(2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9021-891).....	92
(21) 한국은행예치 (9704-970).....	96
(22)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704-972).....	99
(23) 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운용 (9705-974).....	103
(24) 연금복권당첨금 지급분 교부 (9801-980).....	108
(25)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지원 (6333-330).....	113
(26) 개인회생, 파산 종합지원센터 구축 (6341-312).....	118

(27)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6346-328)	126
(28)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사업 (6352-334)	133
(29) 재난적의료비 지원 (6362-344)	139
(30) 입양아동 가족지원 (6364-346)	145
(31)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6365-347)	152
(32)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6372-352)	157
(33) 청소년자립생활관 지원 (6374-354)	164
(3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지원 (6440-311)	172
(35)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 (6541-312)	178
(36)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지원 (6642-313)	187

사 업 명
(1) 지방자치단체지원 (5331 - 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10	013
명칭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 ·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300	5331	302
명칭	복권기금운영 (지자체법정지원)	지방자치단체지원	지방자치단체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지방자치단체 지원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복권기금협의회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지방자치단체 지원	169,863	190,639	190,639	206,199	206,199	15,560	8.2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9,863	169,863	169,863	-	-	190,639	190,639	190,639	-	-	206,199
· 지방자치단체지원	169,863	169,863	169,863	-	-	190,639	190,639	190,639	-	-	206,19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법정배분사업으로 매년 복권수익금의 35% 중 17.267%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 제7호

①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7. 지방자치단체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17.267

- ② 추진경위 : '04년 복권법 제정당시 복권발행 통합의 조건으로 당시 복권발행기관들의 수익금 보전을 위해 도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04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2,750	176,062	169,863	190,639	206,19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복권기금협의회, 17개 시도
- 사업 수혜자 : 소외계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방자치 단체지원	지자체 보조	지자체 보조	206,199	법정배분 사업	복권법상 보조금법 미적용(복권법 제23조 5항)에 따라 보조율 등 재원분담, Matching 등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4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및 자금소요 평가 결과(5위)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복권수익금 206,199백만원(①+②+③+④) 배분

① 기본배분액: '26년 복권수익금*(3,277,874백만원)의 35% 중 17.267%인
198,096백만원

* 복권수익금 = 복권판매수입 - 복권판매사업비 -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② 가감조정 : '24년 성과평가 결과 **가감조정 해당없음**

* 성과평가 결과(5위)에 따라 기본배분액 가감 없음

③ '24년 법정배분액 정산금* : **△697백만원**

* 정산금 = ('24년 결산상 복권수익금 - 기 배분한 복권수익금)

④ **추가배분** : 지역균형발전, 전년도 배분액 등을 감안하여 **8,800백만원** 추가배분

4) 사업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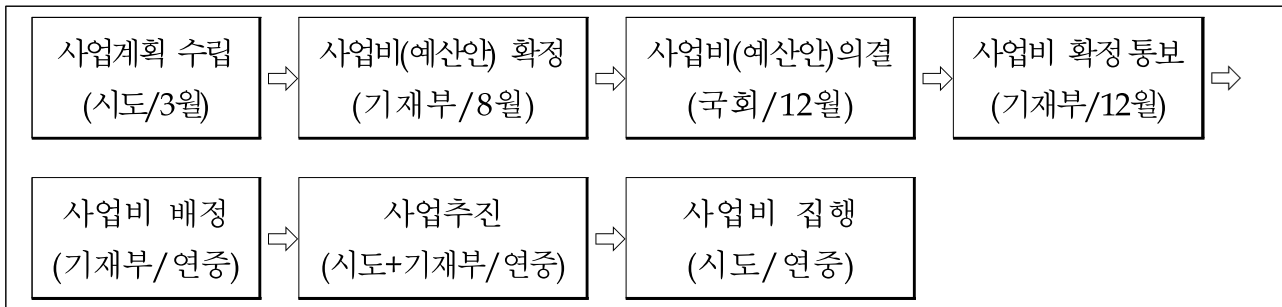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					
2022	152,750	-	152,750	152,750	152,750	100.0	-	-
2023	176,062	-	176,062	176,062	175,329	99.6	-	733
2024	169,863	-	169,863	169,863	169,863	100.0	-	-
2025	190,639	-	190,639	190,639	190,639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1년~2024년 결산사항

2022	- 계획변경 : 해당없음 - 불용사유 : 집행잔액
2023	- 계획변경 : 해당없음 - 불용사유 : 집행잔액
2024	- 계획변경 : 해당없음 - 불용사유 : 집행잔액
2025	- 계획변경 : 해당없음 - 불용사유 : 집행잔액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2)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 (5332 - 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 ·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300	5332	303
명칭	복권기금운영 (지자체법정지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지원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사업시행주체	제주특별자치도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지원	179,600	190,825	190,825	197,336	197,336	6,511	3.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9,600	179,600	179,600	-	-	190,825	190,825	190,825	-	-	197,336
·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저금리 융자지원	17,000	17,000	17,000	-	-	20,500	20,500	20,500	-	-	22,080
·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지원	38,000	38,000	38,000	-	-	41,500	41,500	41,500	-	-	39,000
·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15,000	15,000	15,000	-	-	19,000	19,000	19,000	-	-	19,000
·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지원	31,000	31,000	31,000	-	-	26,529	26,529	26,529	-	-	28,551
·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	49,964	49,964	49,964	-	-	55,463	55,463	55,463	-	-	66,971
· 교통약자지원센터 행복드림 운영	9,636	9,636	9,636	-	-	11,754	11,754	10,036	-	-	12,024
· 희망제주 맞춤형 주거지원	9,000	9,000	9,000	-	-	10,036	10,036	11,754	-	-	9,060
· 영세관광사업체 저금리 융자지원	7,000	7,000	7,000	-	-	6,043	6,043	-	-	-	-
· 고령화 대응 농작업 장비 지원사업	3,000	3,000	3,000	-	-	-	-	6,043	-	-	-
· 제주 미래인재 육성 장학사업	-	-	-	-	-	-	-	-	-	-	6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법정배분사업으로 매년 복권수익금의 35% 중 17.267%를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배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 제8호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호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100분의 17.267

- ##### ② 추진경위 : '04년 복권법 제정당시 복권발행 통합의 조건으로 당시 복권발행기관들의 수익금 보전을 위해 도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04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67,851	176,999	179,600	190,825	197,33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 수혜자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차상위계층, 노인·장애인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제주도개발 사업 특별회계	지자체 보조	지자체 보조	197,336	법정배분 사업	복권법상 보조금법 미적용(복권법 제23조 5항)에 따라 보조율 등 재원분담, Matching 등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4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및 자금소요 평가 결과 등에 따른 가감조정,
'24년 법정배분 정산 등으로 복권수익금 197,336백만원(①+②+③) 배분

① 기본배분액: '26년 복권수익금*(3,277,874백만원)의 35% 중 17.267%인 **198,097백만원**

* 복권수익금 = 복권판매수입 - 복권판매사업비 -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② 가감조정 : **△24백만원**

③ '24년 법정배분액 정산금* : **△737백만원**

* 정산금 = ('24년 결산상 복권수익금 - 기 배분한 복권수익금) × 35% ×
'24년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배분비율(가감조정 반영)

4) 사업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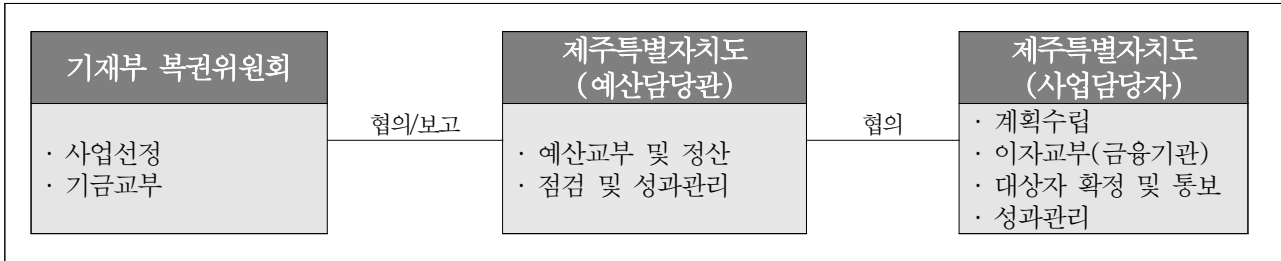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					
2022	167,851	-	167,851	167,851	167,851	100.0	-	-
2023	176,999	-	176,999	176,999	176,999	100.0	-	-
2024	179,600	-	179,600	179,600	179,600	100.0	-	-
2025	190,825	-	190,825	190,825	190,825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계획변경 : 해당없음 - 불용사유 : 집행잔액
2023	- 계획변경 : 세부사업간 사업비 조정 1)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사업 : (당초) 47,000백만원 ⇒ (변경) 48,170백만원 2)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사업 : (당초) 8,700백만원 ⇒ (변경) 7,950백만원 3) 생활환경 취약지구개선 일자리사업 : (당초) 27,160백만원 ⇒ (변경) 26,740백만원 * 복권위원회 변경승인 : 기금사업과-616(2023.11.24)호 - 불용사유 : 집행잔액
2024	- 계획변경 : 해당없음 - 불용사유 : 집행잔액
2025	- 계획변경 : 해당없음 - 불용사유 : 집행잔액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3) 기금관리비 (3578-201)
--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500	3578	201
명칭	기금운영비	기금운영비(복권기금)	기금관리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금관리비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기금관리비	936	727	727	727	516	△211	△29.0

□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비목별 분류(합계)	1,034	1,034	936	-	98	727	727	680	-	47	516
· 일 반 수 용 비 (210-01)	615	605	571	-	34	308	327	327	-	-	176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3	3	0.2	-	2.8	3	3	-	-	3	1
· 특 근 매 식 비 (210-05)	17	17	7	-	10	17	10	9	-	1	10
· 임차료(210-07)	26	26	18	-	8	26	17	17	-	-	21
· 유류비(210-08)	1	1	0.3	-	1	1	1	-	-	1	1
· 일 반 용 역 비 (210-14)	20	20	18	-	2	20	20	18	-	2	20
· 관 리 용 역 비 (210-15)	79	69	69	-	-	79	79	69	-	10	79
· 기 타 운 영 비 (210-16)	12	12	9	-	3	12	9	9	-	-	12
· 국내여비(220-01)	54	54	42	-	13	54	54	40	-	15	54
· 국 외 업 무 여 비 (220-02)	48	48	24	-	24	48	48	33	-	14	48
· 사 업 추 진 비 (240-01)	44	44	44	-	-	44	44	43	-	-	44
· 관 서 업 무 비 (240-02)	14	14	14	-	-	14	14	14	-	-	14
· 정 책 연 구 비 (260-02)	30	50	50	-	-	30	30	30	-	-	30
· 출연금(350-01)	65	65	65	-	-	65	65	65	-	-	-
· 자 산 취 득 비 (430-01)	4	4	4	-	-	4	4	4	-	-	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기금의 원활한 운영 및 복권위원회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제④항

- 복권으로 인한 사행심을 억제하기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비용 및 복권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지급한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77	1,999	1,034	727	51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사무처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6년 편성지침에 따라 '25년 기금운영비를 준용하되 완료소요 반영

(단위: 천원)

구 분	'26계획	비고
<합 계>	516,000	
☐ 운영비	321,812	
☐ 여비	102,428	
☐ 업무추진비	57,760	
☐ 연구용역비	30,000	
☐ 자산취득비	4,000	-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077	-	1,077	1,077	1,019	94.6	-	58
2023	1,999	-	1,999	1,999	1,990	99.5	-	9
2024	1,034	-	1,034	1,034	936	90.6	-	98
2025	727	-	727	727	680	93.5	-	4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4) 복권사업비 (524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200	5243	301
명칭	복권기금운영(일반)	복권판매사업	복권사업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복권사업비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발행관리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수행(수탁사업자 선정)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복권사업비	4,324,099	4,555,768	4,555,768	4,806,289	4,806,289	250,521	5.5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323,397	4,361,265	4,324,099	-	37,166	4,555,768	4,626,925	4,639,371	-	-	4,806,289
· 복권당첨금	3,784,577	3,819,523	3,790,460	-	29,063	3,994,610	4,054,134	4,065,789	-	-	4,218,712
· 판매수수료	423,623	429,373	425,263	-	4,110	446,208	457,671	458,058	-	-	471,247
· 위탁수수료	81,381	81,572	80,515	-	1,057	82,289	82,459	83,575	-	-	83,153
· 발행경비	33,786	30,767	27,840	-	2,927	32,630	32,630	31,928	-	702	33,149
· 자문단 운영비	30	30	21	-	9	31	31	21	-	10	2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발행 및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당첨금, 각종 수수료 등 관련 제비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2조(복권발행업무의 위탁·재위탁)

② 추진경위

- 기관별 자율적 복권발행
- 복권발행협의회('00.3), 복권발행조정위원회('02.3) 등 발행기관간 의견조정 기구 설립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04.1.29)
- 복권위원회로 복권발행기관 일원화('04.4.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4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859,779	4,043,355	4,323,397	4,555,768	4,806,28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사무처(수탁사업자 선정)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복권당첨금: 4,218,712백만원

- 복권 예상판매금액에 각 복권상품별 당첨금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출

② 판매수수료: 471,247백만원

- 상품별 예상판매액의 복권판매점에 지급하는 경비로, 판매금액의 5.5~10.0%

③ 위탁수수료: 83,153백만원

- 복권사업 위수탁계약서에 따른 약정수수료를 적용하여 산출

④ 발행경비: 33,149백만원

- 인쇄·결합복권의 인쇄비용 및 복권감사시스템 운영(신규시스템 감리 포함) 등
- 온라인복권과 결합복권 공개추첨을 위한 방송 비용

⑤ 복권시스템 및 복권사고 검증자문단 경비: 28백만원

- 검증자문단 관련 수당 등

4) 사업효과: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복권의 발행·판매업무 위탁 : 복권위원회 → 수탁사업자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9조,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7조 내지 제9조에 근거하여 사업 집행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788,501	-	3,788,501	3,859,779	3,765,371	97.6	-	94,407
2023	4,003,172	-	4,003,172	4,043,355	3,971,718	98.2	-	71,637
2024	4,323,397	-	4,323,397	4,361,265	4,324,099	99.1	-	37,166
2025	4,555,768	-	4,555,768	4,626,925	4,639,371	100.3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당첨금, 판매수수료 등 복권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복권발행계획」 상 예상판매금액과 실제판매금액간 차이에 따른 불용액(2.4%) 발생
2023	▪ 당첨금, 판매수수료 등 복권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복권발행계획」 상 예상판매금액과 실제판매금액간 차이에 따른 불용액(1.7%) 발생
2024	▪ 당첨금, 판매수수료 등 복권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복권발행계획」 상 예상판매금액과 실제판매금액간 차이에 따른 불용액(0.9%) 발생
2025	▪ 당첨금, 판매수수료 등 복권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계획대비 판매가 더 이루어져 초과지출분 발생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026.12.19.)	당첨금, 수수료	320	02	71,157	판매액 증가 예상에 따른 연동 지출분 증가
합 계				71,157	

사 업 명
(5)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5247-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200	5247	300
명칭	복권기금운영(일반)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사행산업 중독예방 부담금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사행산업 중독예방 부담금	9,131	11,048	11,112	11,634	11,634	586	5.3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비목별 분류(합계)	11,016	11,016	9,131	-	1,885	11,048	11,112	11,112	11,112	11,112	11,112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1,016	11,016	9,131	-	1,885	11,048	11,112	11,112	11,112	11,112	11,11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매출액의 일부를 도박중독예방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사행산업 중독예방치유 부담금으로 납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2
- ② 추진경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중독치유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13년부터 사행산업자는 순매출액의 0.5% 범위내('25년 현재 0.35%)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부담금 납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3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991	9,693	11,016	11,048	11,63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사무처
- 사업 수혜자 : 사행산업 중독·치유 대상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사행사업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의2에 따라 순매출액의 0.5% 범위 내('25년 현재 0.35%)에서 사행산업 중독의 예방·치유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담금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납부
 - '25년 복권 판매추이 및 향후 감면사항을 감안, '24년 대비 +5.3% 증액 요구
 - '25년 복권 예상 순매출액* 36,933억원 × 시행령 0.35% × 90%(10%감면)
 - * 복권 예상 순매출액 = 예상 매출 76,879억원 - 당첨금 39,946억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7,790백만원 집행 및 1,201백만원 불용
2023	8,717백만원 집행 및 976백만원 불용
2024	9,131백만원 집행 및 1,885백만원 불용
2025	전액집행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사행산업 중독치유사업에 활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복권위원회사무처 직접 시행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8,991	-	8,991	8,991	7,790	86.6	-	1,201
2023	9,693	-	9,693	9,693	8,717	89.9	-	976
2024	11,016	-	11,016	11,016	9,131	82.9	-	1,885
2025	11,048	-	11,112	11,112	11,112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1년 건전화 평가 및 총량준수 결과에 따라 부담금 일부를 감면 받음
2023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2년 건전화 평가 및 총량준수 결과에 따라 부담금 일부를 감면 받음
2024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3년 건전화 평가 및 총량준수 결과에 따라 부담금 일부를 감면 받음
2025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4년 건전화 평가 및 총량준수 결과에 따라 부담금 일부를 감면 받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2025.8.28)	사행산업 중독예방 부담금 (56247-300)	210	02	11,112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확정·통보(25.5월)한 “2025년 사행산업 중독예방 부담금” 반영 필요
합 계				11,112	

사 업 명
(6)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8910-89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10	890
명칭	기금간거래(전출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과학기술 진흥기금 전출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사업시행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과학기술 진흥기금 전출	125,055	137,447	137,447	114,974	114,974	△22,473	△16.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말)								2026 계 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 년 도 이 월 액 계 의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당초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5,055	125,055	125,055	-	-	137,447	137,447	137,447	137,447	137,447	137,447	-	-	114,974
·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125,055	125,055	125,055	-	-	137,447	137,447	137,447	137,447	137,447	137,447	-	-	114,97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법정배분사업으로 매년 복권수익금의 35% 중 12.583%를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배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 제1호

①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 100분의 12.583

② 추진경위 : '04년 복권법 제정당시 복권발행 통합의 조건으로 당시 복권발행기관들의 수익금 보전을 위해 도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04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0,527	109,957	125,055	137,447	114,97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 사무처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4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및 자금소요 평가 결과 등에 따른 가감조정, '24년도 법정배분 정산 등으로 복권수익금 114,974백만원(①+②+③) 배분

① 기본배분액: '26년 복권수익금*(3,277,874백만원)의 35% 중 12.583%인 **144,359백만원**

* 복권수익금 = 복권판매수입 - 복권판매사업비 -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② 가감조정 : **△28,872백만원**

③ '24년 법정배분액 정산금* : **△513백만원**

* 정산금 = ('24년 결산상 복권수익금 - 기 배분한 복권수익금) × 35% × '24년 과학기술진흥기금 배분비율(가감조정 반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① 연간 자금계획 수립
: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복권위원회로 제출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 작성·통보
- ②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복권위원회로 월별 자금교부 요청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수급상황을 감안 요청에 대한 조정 결과를 통보 → 복권위원회는 매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요일에 자금 교부

<집행절차>

부처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복권기금 (114,974백만원)	=> (114,974 백만원)	과학기술진흥기금 (114,974백만원)	=> (114,974 백만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114,974백만원)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30,527	-	130,527	-	130,527	101,244	77.6	77.6	-	29,283
2023	109,957	-	109,957	-	109,957	109,957	100.0	100.0	-	-
2024	125,055	-	125,055	-	125,055	125,055	100.0	100.0	-	-
2025	137,447	-	137,447	-	137,447	137,447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과학기술진흥기금전출사업 중 여유자금운용으로 편성된 29,283백만원 미전출 불용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7)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 (8911-89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11	891
명칭	기금간거래(전출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국민체육 진흥기금 전출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사업시행주체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총괄팀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	91,954	92,044	92,044	94,808	94,808	2,764	3.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말)							2026 계 획
	예산액 (추경)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 예 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이월액 예 산 현 액	제 외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 (합계)	91,954	91,954	91,954	-	-	92,044	92,044	92,044	92,044	92,044	-	-	94,808
· 국민체육진흥 기금 전출	91,954	91,954	91,954	-	-	92,044	92,044	92,044	92,044	92,044	-	-	94,80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법정배분사업으로 매년 복권수익금의 35% 중 10.371%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배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 제2호

①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 100분의 10.371

② 추진경위 : '04년 복권법 제정당시 복권발행 통합의 조건으로 당시 복권발행기관들의 수익금 보전을 위해 도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4~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3,814	91,450	91,954	92,044	94,80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 사무처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4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및 자금소요 평가 결과 등에 따른 가감조정, '24년도 법정배분 정산 등으로 복권수익금 **94,808백만원(①+②+③)** 배분

① 기본배분액: '26년 복권수익금*(3,277,874백만원)의 35% 중 10.371%인 **118,982백만원**

* 복권수익금 = 복권판매수입 - 복권판매사업비 -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② 가감조정 : △23,796백만원

③ '24년 법정배분액 정산금* : △377백만원

* 정산금 = ('24년 결산상 복권수익금 - 기 배분한 복권수익금) × 35% × '24년 국민체육진흥기금 배분비율(가감조정 반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연간 자금계획 수립

: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복권위원회로 제출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 작성·통보

②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복권위원회로 월별 자금교부 요청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수급상황을 감안 요청에 대한 조정 결과를 통보 → 복권위원회는 매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요일에 자금 교부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9)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0)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 획 액			전년도 이월액	계 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93,814	-	93,814	-	93,814	93,814	100.0	100.0	-	-
2023	91,450	-	91,450	-	91,450	91,450	100.0	100.0	-	-
2024	91,954	-	91,954	-	91,954	91,954	100.0	100.0	-	-
2025	92,044	-	92,044	-	92,044	92,044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 없음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해당 없음

사 업 명						
(8) 근로복지진흥기금 전출 (8912-89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12	892
명칭	기금간거래(전출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전출	근로복지진흥기금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근로복지 진흥기금 전출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근로복지 진흥기금 전출	63,513	61,699	61,699	60,628	60,628	△1,071	△1.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 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 년 도 이 월 액 제 외		이 월 예상액	불 용 예상액	
						당 초	수 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 (합계)	63,513	63,513	63,513	-	-	61,699	61,699	61,699	61,699	61,699	61,699	-	-	60,628
· 근로복지진흥 기금 전출	63,513	63,513	63,513	-	-	61,699	61,699	61,699	61,699	61,699	61,699	-	-	60,62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법정배분사업으로 매년 복권수익금의 35% 중 5.310%를 근로복지진흥기금에 배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 제3호

①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 100분의 5.310

- ② 추진경위 : '04년 복권법 제정당시 복권발행 통합의 조건으로 당시 복권발행기관들의 수익금 보전을 위해 도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4~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9,758	64,400	63,513	61,699	60,62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 사무처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4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및 자금소요 평가 결과 등에 따른 가감조정, '24년 법정배분 정산 등으로 복권수익금 60,628백만원(①+②+③) 배분

① 기본배분액: '25년 복권수익금*(3,277,874백만원)의 35% 중 5.310%인 **60,919백만원**

* 복권수익금 = 복권판매수입 - 복권판매사업비 -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② 가감조정 : **△30백만원**

③ '24년 법정배분액 정산금* : **△261백만원**

* 정산금 = ('24년 결산상 복권수익금 - 기 배분한 복권수익금) × 35% × '24년 근로복지진흥기금 배분비율(가감조정 반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연간 자금계획 수립

: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복권위원회로 제출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 작성·통보

②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복권위원회로 월별 자금교부 요청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수급상황을 감안 요청에 대한 조정 결과를 통보 → 복권위원회는 매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요일에 자금 교부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9)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0)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 획 액			전 년 도 이 월 액	계 획 현 액 (B)	집 행 액 (C)	집 행 률 (C/A)	집 행 률 (C/B)	다 음 연 도 이 월 액	불 용 액
	당 초	증 감 액	수 정 (A)							
2022	159,758	-	159,758	-	159,758	159,758	100.0	100.0	-	-
2023	64,400	-	64,400	-	64,400	64,400	100.0	100.0	-	-
2024	63,513	-	63,513	-	63,513	63,513	100.0	100.0	-	-
2025	61,699	-	61,699	-	61,699	61,699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 없음

사 업 명
(9) 주택도시기금 전출 (8913-89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일반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13	893
명칭	기금간거래(전출금)	주택도시기금 전출	주택도시기금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주택도시 기금전출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사업시행주체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공공주택정책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주택도시기금 전출	450,040	450,040	450,040	400,000	400,000	△50,040	△11.1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50,040	450,040	450,040	-	-	450,040	450,040	450,040	-	-	400,000
· 주택도시기금 전출	450,040	450,040	450,040	-	-	450,040	450,040	450,040	-	-	40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존주택 전세임대)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복권·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1호,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및 제45조의2
- ② 추진경위
 - '05. 4 : 임대주택정책 개편방 발표, 기존주택 전세임대제도 도입
 - '06. 8 : 부동산정책회의에서 전세임대 물량확대, 전세임대 40,300호(연간 5,800호)
 - '08. 5 : '08년 주택종합계획, 기존주택 전세임대 : '08~'12년까지 총 46,800호 공급
 - '10. 9 : 「8·15 경축사 후속조치」,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속 공급 ('10년~'12년까지 연 2만호 수준으로 공급)

- '11. 1 : 「1·13 전월세가격 안정화방안」 추진과제
- '12. 5 : '12년 주택종합계획,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 연2만호 공급
- '13. 4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17년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 연4만호 공급
- '14. 10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15년 매입·전세임대주택 1만호 추가공급('15년 5만호 공급)
- '15. 9 :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대책
'16년 전세임대주택 물량확대 공급(고령층 신설 2천호, 대학생 확대 2천호) ('16년 2.7만호 → 3.1만호)
- '16. 4 : 전세임대 1만호 확대(3.1만 → 4.1만호) 및 지원단가 호당 500만원 상향 발표
- '17. 4 : 전세임대 7천호 확대 공급(2.7만 → 3.4만호)
- '17. 11 :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18~'22년간 임차형 17만호 공급
- '18. 7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발표,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기숙사형 신규 도입 등
- '19. 10 : 아동 주거권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발표, 다자녀 전세임대 신규 도입
- '22. 8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23~'27년간 전세임대 15만호 이상 공급
- '24. 8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25~'26년간 전세임대형 든든 주택 1만호 공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4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50,397	450,040	450,040	450,040	400,000

- 기타: '26년 전세임대 4.5만호 공급 추진 중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 사업 수혜자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주택도시기금 전출 '26 요구금액 : 400,000백만원, △11.1 %>

① 다가구 매입임대 : ('25) 135,000 → ('26요구) -, △100 %

- (요구) 매입임대 공급을 위한 지원 예산을 전세임대 공급 지원으로 일원화

② 기존주택 전세임대 : ('25) 315,040 → ('26요구) 400,000백만원, 26.9%

- (요구) 매입임대 공급 지원 예산을 전세임대 공급 지원으로 일원화하여, 전세임대 공급 지원(물량) 확대

- (산출) 4,300호 × 93백만원/호 × 1.00(지원율)

* 사업물량 : ('25년) 3,388호 → ('26요구) 4,300호(912호 증)

* 지원단가 : ('25년) 93백만원/호 → ('26요구) 93백만원/호(-%)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다가구매입 취약계층 입주율 (단위: %)	목표				80		당해연도 LH 매입임대 일반유형 입주 물량 중 취약계층(1순위 및 저소득 장애인) 입주 물량	LH 일반유형 1순위 및 저소득 장애인 입주 물량 / LH 일반유형 입주 물량	국토부 내부자료 (LH 월별 실적보고자료)
	실적				-	-			
	달성도				-	-			
전세임대 취약계층 입주율 (단위: %)	목표				89	89	당해연도 LH 전세임대 일반유형 입주 물량 중 취약계층(1순위 및 저소득 장애인) 입주 물량	LH 일반유형 1순위 및 저소득 장애인 입주 물량 / LH 일반유형 입주 물량	국토부 내부자료 (LH 월별 실적보고자료)
	실적				-	-			
	달성도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다가구매입 19,453호, 전세임대 44,804호 지원
2023	○ 다가구매입 10,673호, 전세임대 38,886호 지원
2024	○ 다가구매입 47,398호, 전세임대 44,609호 지원
2025	○ 다가구매입 65,000호, 전세임대 48,000호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지원 지속 추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① 연간 자금계획 수립 :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복권위원회로 제출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 작성·통보
- ②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복권위원회로 월별 자금교부 요청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수급상황을 감안, 기관별 요청에 대한 조정결과 통보 → 최종적으로 복권위원회는 매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요일에 자금 교부

<집행절차>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 사업수행자
국토교통부 (400,000백만원)	=> (400,000백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 (400,000백만원)	=> (400,000백만원)	LH, 지자체 등 약 40개 기관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우수)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50,397	-	550,397	550,397	550,397	100.0	-	-
2023	450,040	-	450,040	450,040	450,040	100.0	-	-
2024	450,040	-	450,040	450,040	450,040	100.0	-	-
2025	450,040	-	450,040	450,040	450,04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10)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전출 (8914-89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14	894
명칭	기금간거래(전출금)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전출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중소벤처기업 창업및진흥기금 전출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사업시행주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획예산팀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중소벤처기업 창업및진흥기금 전출	72,752	82,620	82,620	83,308	83,308	688	0.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말)							2026 계 획
	예산액 (추경)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 예산	예 산 현 액	집 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예 산 현 액	제 외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 용 예상액	
○ 기능별 분류(합계)	72,752	72,752	72,752	-	-	82,620	82,620	82,620	82,620	82,620]	-	-	83,308
· 중소기업 창업및진흥 기금 전출	72,752	72,752	72,752	-	-	82,620	82,620	82,620	82,620	82,620]	-	-	83,30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법정배분사업으로 매년 복권수익금의 35% 중 6.356%를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 배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 제5호

①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①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100분의 6.356

- ② 추진경위 : '04년 복권법 제정당시 복권발행 통합의 조건으로 당시 복권발행기관들의 수익금 보전을 위해 도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4~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4,666	78,907	72,752	82,620	83,30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4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및 자금소요 평가 결과 등에 따른 가감조정 및 '24년 법정배분 정산 등으로 복권수익금 **83,308백만원(①+②+③)** 배분

① 기본배분액 : '26년 복권수익금*(3,277,874백만원)의 35% 중 6.356%인 72,919백만원

* 복권수익금 = 복권판매수입 - 복권판매사업비 -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② 가감조정 : +10,687백만원

③ '24년 법정배분액 정산금* : △298백만원

* 정산금 = ('24년 결산상 복권수익금 - 기 배분한 복권수익금) × 35% × '24년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배분비율(가감조정 반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연간 자금계획 수립

: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복권위원회로 제출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 작성·통보

②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복권위원회로 월별 자금교부 요청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수급상황을 감안 요청에 대한 조정 결과를 통보 → 복권위원회는 매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요일에 자금 교부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74,666	-	74,666	-	74,666	74,666	100.0	100.0	-	-	-	-
2023	78,907	-	78,907	-	78,907	78,907	100.0	100.0	-	-	-	-
2024	72,752	-	72,752	-	72,752	72,752	100.0	100.0	-	-	-	-
2025	82,620	-	82,620	-	82,620	82,620	100.0	100.0	-	-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11) 보훈기금(국가유공자지원자금계정) 전출 (8916-89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16	896
명칭	기금간거래(전출금)	보훈기금 전출	보훈기금(국가유공자 지원자금계정)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보훈기금 전출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국가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 복지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국가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 복지정책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보훈기금 (국가유공자 지원자금 계정) 전출	7,276	6,886	6,886	9,518	9,378	2,492	36.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 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 년도 이월액 제외		이 월 예상액	불 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276	7,276	7,276	-	-	6,886	6,886	6,886	6,639	6,886	6,639	-	247	9,378
· 보훈 기금 (국 가 유 공자 지원 자금 계 정) 전 출	7,276	7,276	7,276	-	-	6,886	6,886	6,886	6,639	6,886	6,639	-	247	9,37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 전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 제2호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② 추진경위

- (중상이자보조기기 지급) '11년부터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해 보행 기능이 상실되거나 현저한 기능장애로 있는 중상이 국가유공자 등에게 휠체어 등 보조기기 지급
- (보훈복지시설 건립) '06년부터 보훈요양원 건립 추진(전주보훈요양원 등 8개소 건립)
- (히어로즈패밀리프로그램) '24년부터 국가안보 및 국민 보호를 위한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제복 근무자의 유가족이 자긍심을 갖고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1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154	8,498	7,276	6,886	9,37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 사무처
- 사업 수혜자 : 국가유공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① 중상이자 보조기기 지급 : 2,472백만원
- ② 보훈복지시설 건립 : 6,031백만원
- ③ 히어로즈패밀리 프로그램 : 875백만원
- ※ 복권기금 조성 비율 100% 사업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연간 자금계획 수립

: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복권위원회로 제출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 작성·통보

- ②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복권위원회로 월별 자금교부 요청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수급상황을 감안 요청에 대한 조정 결과를 통보 → 복권위원회는 매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요일에 자금 교부

<집행절차>

부처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복권기금 (9,378백만원)	=> (9,378 백만원)	보훈기금(국가 유공자지원자금 계정) 전출 (9,378백만원)	=> (8,503* 백만원)	한국보훈복지의료 공단 (8,503백만원)

* 9,378백만원 중 국가보훈부 직접 사업인 875백만원(히어로즈패밀리 프로그램 사업)을 제외한 8503백만원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지출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2,154	-	2,154	-	2,154	2,154	100.0	100.0	-	-
2023	8,498	-	8,498	-	8,498	8,498	100.0	100.0	-	-
2024	7,276	-	7,276	-	7,276	7,276	100.0	100.0	-	-
2025	6,886	-	6,886	-	6,886	6,639	96.4	96.4	-	247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 없음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보훈복지시설 건립 사업 : 247백만원 불용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12) 보훈기금(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계정) 전출 (8916-89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16	897
명칭	기금간거래(전출금)	보훈기금 전출	보훈기금(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보훈기금 전출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국가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 복지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국가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 복지정책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보훈기금 (국가유공자 지원자금 계정) 전출	14,800	14,667	14,667	13,684	13,684	△ 983	△ 6.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 획
	계 획 액 (수 정)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실 집 행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실 집 행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제외		이 월 예 상 액	불 용 예 상 액	
						당 초	수 정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실 집 행 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800	14,800	14,800	-	-	14,667	14,667	14,667	14,667	14,667	14,667	-	-	13,684
· 보 훈 기 금 (참 전 유 공 자 · 제 대 군 인 지 원 자 금 계 정) 전 출	14,800	14,800	14,800	-	-	14,667	14,667	14,667	14,667	14,667	14,667	-	-	13,68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 전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 제2호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② 추진경위

- '15년부터 독거 참전유공자 중 3개이상 복합질환자에게 주 3회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개시(사회복지사 26명, 재가보훈실무관 378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1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4,015	14,421	14,800	14,667	13,68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 사무처
- 사업 수혜자 : 참전유공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 복지지원 : 13,684백만원

※ 복권기금 조성 비율 100% 사업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연간 자금계획 수립

: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복권위원회로 제출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 작성·통보

②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복권위원회로 월별 자금교부 요청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수급상황을 감안 요청에 대한 조정 결과를 통보 → 복권위원회는 매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요일에 자금 교부

<집행절차>

부처		부처
복권기금 (13,684백만원)	=> (13,684 백만원)	보훈기금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 계정계정) 전출 (13,684백만원)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2,154	-	2,154	-	2,154	2,154	100.0	100.0	-	-
2023	8,498	-	8,498	-	8,498	8,498	100.0	100.0	-	-
2024	7,276	-	7,276	-	7,276	7,276	100.0	100.0	-	-
2025	6,886	-	6,886	-	6,886	6,639	96.4	96.4	-	247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 없음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13) 양성평등기금 전출 (8917 - 89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17	897
명칭	기금간거래(전출금)	양성평등기금 전출	양성평등기금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양성평등기금 전출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사무처 기금사업과
	사업시행주체	성평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양성평등기금 전출	737,764	776,926	776,926	805,290	806,586	29,660	3.8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 (합계)	740,303	740,303	737,764	-	2,539	776,926	776,926	776,589	-	337	806,586
· 양성평등기금 전출	740,303	740,303	737,764	-	2,539	776,926	776,926	776,589	-	337	806,58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 전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3항 3호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6~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66,340	678,630	758,242	776,926	806,58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 사무처
- 사업 수혜자 :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1.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572,246백만원
2.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2,301백만원
3.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 4,667백만원
4.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 151,379백만원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 21,137백만원
6.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지원 : 46,261백만원
7.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 8,59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연간 자금계획 수립

: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복권위원회로 제출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 작성·통보

②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복권위원회로 월별 자금교부 요청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수급상황을 감안 요청에 대한 조정 결과를 통보 → 복권위원회는 매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요일에 자금 교부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					
2022	595,617	-	595,617	595,617	595,576	99.9	-	41
2023	680,446	△4,814	675,632	675,632	630,008	93.3	-	45,624
2024	758,242	△17,939	740,303	740,303	737,764	99.7	-	2,539
2025	776,926	-	776,926	776,926	776,589	100.0	-	33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액 : 집행잔액 등 41백만원/ 이·전용 : 해당사항 없음
2023	- 불용액 : 집행잔액 등 45,624백만원/ 이·전용 : 해당사항 없음
2024	- 불용액 : 집행잔액 등 2,539백만원 / 이·전용 : 해당사항 없음
2025	- 불용액 : 집행잔액 등 337백만원 / 이·전용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14)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8918-898)
--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일반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18	898
명칭	기금간거래(전출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문화예술진흥 기금 전출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사업시행주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문화예술진흥 기금전출	248,786	267,707	267,707	280,871	280,871	13,164	4.9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48,786	248,786	248,786	-	-	267,707	267,707	267,707	-	-	280,871
· 문화예술진흥 기금 전출	248,786	248,786	248,786	-	-	267,707	267,707	267,707	-	-	280,87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 전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복권·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4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4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73,868	235,674	248,786	267,707	280,87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 사무처
- 사업 수혜자 : 전국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280,871백만원>

① 통합문화이용권 : 276,516백만원

- 카드사업비 : 271,624백만원
 - (전체지원금) 15만원 x 2,558,324명 x 70% = 268,624백만원
 - (청소년기·생애전환기 대상 추가 지원금) 1만원 x 428,571명 x 70% = 3,000백만원
- 운영비 : 4,892백만원

②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 4,355백만원

- 사업비 : 3,575백만원
- 운영비 : 78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연간 자금계획 수립

: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복권위원회로 제출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 작성·통보

②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복권위원회로 월별 자금교부 요청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수급상황을 감안 요청에 대한 조정 결과를 통보 → 복권위원회는 매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요일에 자금 교부

<집행절차>

부처		부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복권기금 (280,871백만원)	=> (280,871 백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280,871백만원)	=> (280,871 백만원)	한국문화예술위원 회, 17개 시도 (280,871백만원)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 획 액			계 획 현 액 (A)	집 행 액 (B)	집 행 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73,868	-	173,868	173,868	173,868	100.0	-	-
2023	243,896	-	243,896	243,896	235,674	96.6	-	8,222
2024	248,786	-	248,786	248,786	248,786	100.0	-	-
2025	267,707	-	267,707	267,707	267,707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15) 청소년육성기금 전출 (8919 - 89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19	899
명칭	기금간거래(전출금)	청소년육성기금 전출	청소년육성기금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양성평등기금 전출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사무처 기금사업과
	사업시행주체	성평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양성평등기금 전출	148,383	151,259	151,259	128,052	129,012	△ 22,247	△ 14.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 (합계)	149,596	149,596	148,383	-	1,213	151,259	151,259	150,507	-	752	129,012
· 청소년육성 기금 전출	149,596	149,596	148,383	-	1,213	151,259	151,259	150,507	-	752	129,01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 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 전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3항 3호

-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7,638	149,473	149,596	151,259	129,01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 사무처
- 사업 수혜자 :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 |
|-----------------------------|
| ① 아동·청소년성범죄 예방교육 : 5,097백만원 |
| ②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 74,419백만원 |
| ③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 36,755백만원 |
| ④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 12,741백만원 |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연간 자금계획 수립

: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복권위원회로 제출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 작성·통보

②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복권위원회로 월별 자금교부 요청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수급상황을 감안 요청에 대한 조정 결과를 통보 → 복권위원회는 매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요일에 자금 교부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					
2022	137,638	-	137,638	137,638	135,750	98.6	-	1,888
2023	149,817	-	149,817	149,817	149,473	99.8	-	344
2024	149,596	-	149,596	149,596	148,383	99.2	-	1,213
2025	151,259	-	151,259	151,259	150,507	99.5	-	75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액 : 집행잔액 등 1,888백만원 / 이·전용 : 해당사항 없음
2023	- 불용액 : 집행잔액 등 344백만원 / 이·전용 : 해당사항 없음
2024	- 불용액 : 집행잔액 등 1,213백만원 / 이·전용 : 해당사항 없음
2025	- 불용액 : 집행잔액 등 752백만원 / 이·전용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16) 국가유산보호기금 전출 (8920-89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20	890
명칭	기금간거래(전출금)	국가유산보호기금 전출	국가유산보호기금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국가유산 보호기금 전출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사업시행주체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국가유산 보호기금 전출	152,611	144,815	144,815	170,646	170,646	25,831	17.8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 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 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52,611	152,611	152,611	-	-	144,815	144,815	144,815	144,815	144,815	144,815	-	-	170,646
· 국가유산보호기금 전출	152,611	152,611	152,611	-	-	144,815	144,815	144,815	144,815	144,815	144,815	-	-	170,64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법정배분사업으로 매년 복권수익금의 35% 중 14.286%를 국가유산보호기금에 배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 제6호

①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6.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5호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 100분의 14.286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10년~ (계속)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10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40,643	158,339	152,611	144,815	170,64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사무처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4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및 자금소요 평가 결과 등에 따른 가감조정, '24년도 법정배분 정산 등으로 복권수익금 170,646백만원(①+②+③) 배분

① 기본배분액: '26년 복권수익금*(3,277,874백만원)의 35% 중 14.286%인 **163,897백만원**

* 복권수익금 = 복권판매수입 - 복권판매사업비 -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② 가감조정 : **+7,375백만원**

③ '24년 법정배분액 정산금* : **△626백만원**

* 정산금 = ('24년 결산상 복권수익금 - 기 배분한 복권수익금) × 35% × '24년 국가유산보호기금 배분비율(가감조정 반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연간 자금계획 수립

: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복권위원회로 제출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 작성·통보

②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복권위원회로 월별 자금교부 요청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수급상황을 감안 요청에 대한 조정 결과를 통보 → 복권위원회는 매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요일에 자금 교부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40,643	-	140,643	-	140,643	140,643	100.0	100.0	-	-
2023	158,339	-	158,339	-	158,339	158,339	100.0	100.0	-	-
2024	152,611	-	152,611	-	152,611	152,611	100.0	100.0	-	-
2025	144,815	-	144,815	-	144,815	144,815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17) 응급의료기금 전출 (8923 - 89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23	891
명칭	기금간거래(전출금)	응급의료기금 전출	응급의료기금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응급의료기금 전출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사무처 기금사업과
	사업시행주체	소방청 119구급과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4년 계획		2025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응급의료기금 전출	1,610	6,440	6,440	5,635	5,635	△ 805	△ 12.5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10	1,610	1,610	-	-	6,440	6,440	6,440	-	337	5,635
· 응급의료기금 전출	1,610	1,610	1,610	-	-	6,440	6,440	6,440	-	337	5,63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에 대한 지원 사업)에 재원 전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5호 및 시행령 제17조제5항

-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령) 제17조⑤ 법 제2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서 복권위원회가 의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22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750	5,635	1,610	6,440	5,63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 사무처
- 사업 수혜자 : 자연 및 사회재난에 피해가 있는 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안 산출 근거

- 응급의료기금 전출(특수목적 구급차량 구입 지원)
5,635백만원 = 230백만원x49대x5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연간 자금계획 수립

: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복권위원회로 제출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 작성·통보

②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복권위원회로 월별 자금교부 요청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수급상황을 감안 요청에 대한 조정 결과를 통보 →
복권위원회는 매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요일에 자금 교부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					
2022	5,750	-	5,750	5,750	5,750	100.0	-	-
2023	5,635	-	5,635	5,635	5,635	100.0	-	-
2024	1,610	-	1,610	1,610	1,610	100.0	-	-
2025	6,440	-	6,440	6,440	6,44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 해당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18) 기후대응기금 전출 (8924-88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일반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24	898
명칭	기금간거래(전출금)	기후대응기금 전출	기후대응기금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후대응기금 전출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사업시행주체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기후대응기금 전출	108,333	107,593	107,593	106,893	106,893	△700	△0.7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8,333	108,333	108,333	-	-	107,593	107,593	107,593	-	-	106,893
· 기후대응기금 전출	108,333	108,333	108,333	-	-	107,593	107,593	107,593	-	-	106,89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사업에 재원 전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복권·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3호

② 추진경위

- '23년 : 기금운용계획 변경*(+86억원)을 통한 취약계층 대상 지원 확대 추진
- '24년 : 사회복지시설 대상 냉방지원(에어컨 보급) 신규 추진
- '25년 : 「국정과제(39-3) 햇빛·바람연금 -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개선」 포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3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95,646	108,333	107,593	106,893

- 기타: '26년 저소득 취약계층 56,000가구 등 지원 목표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 사무처
- 사업 수혜자 : 기초생활수급가구(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 등 제외),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 (2025 당초 계획) 107,593백만원 → 106,893백만원, 700백만원 감액

① 시공·물품지원 : ('25) 90,230백만원 → ('26요구) 90,075백만원 (△155백만원)

- (산출) 가구 : 3.7만 가구 × 평균 시공단가 243백만원 = 89,910백만원
- 시설 : 15개소 × 평균 시공단가 11백만원 = 165백만원

② 냉방지원 : ('25) 14,760백만원 → ('26요구) 14,058백만원 (△702백만원)

- (산출) 가구 : 1.9만가구 × 0.72백만원 = 13,680백만원
- 시설 : 105개소 × 3.6백만원 = 378백만원

③ 사업운영비 : ('25) 1,023백만원 → ('26요구) 1,028백만원 (+5백만원)

④ 에너지진단 : ('25) 500백만원 → ('26요구) 500백만원 (전년 同)

⑤ 인건비 : ('24) 1,080백만원 → ('25요구) 1,232백만원 (+15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에너지효율개선 온실가스 감축량 (단위: tCO2eq)	목표	신규	35,506	-	17,526*	19,739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성과분석 보고서(3개년 (‘22~’24) 평균) 및 ’26년 지원 목표 가구	단위면적당 에너지절감량 × 표준면적 × 연료별 온실가스 환산계수	에너지진단 및 기술지원 연구용역
	실적	36,511	40,032	-	-	-			
	달성도	-	112.7%	-	-	-			
에너지사용량 절감률 (단위: %)	목표	-	신규	21%	-	-	-	사업 전·후 단위 면적당 연간 난방에너지 소요량 절감률을 분석	에너지진단 및 기술지원 연구용역
	실적	22.5%	22.4%	22.6%	-	-			
	달성도	-	-	107.6%	-	-			
에너지효율개선 난방지원 가구 수 (단위: 가구)	목표	-	신규	36,000	36,000	37,000	지원 목표 가구 수	에너지효율 개선 난방지원 가구 수	사업관리시스 템을 통한 집계
	실적	29,444	35,386	36,977	-	-			
	달성도	-	-	102.7%	-	-			

* '23년까지는 전력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였으나, '25년부터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료별(도시가스 및 등유) 감축효과를 산정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사각지대의 저소득가구 시공·물품지원 5.1만 가구 지원 - 사회복지시설 202개소 지원, 에어컨 15,140가구 지원 - 연말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긴급한 지원 소요에 대응하는 동절기 보일러 단독·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사업기간을 '24.3월까지로 연장 및 1,528가구 지원
2024	- 에어컨 1.8만대(가구, '24.7월 완료) 및 500개소(시설, '24.8월 완료) 적기 지원 목표 달성 - 저소득가구 난방 36,977가구 및 냉방 18,034가구, 사회복지시설 난방 272개소 및 냉방 532개소 지원 완료 - 연말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긴급한 지원 소요에 대응하는 동절기 보일러 단독·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사업기간을 '25.2월까지로 연장 및 676가구 지원
2025	- 에어컨 1.8만대(가구, '25.7월 완료) 및 500개소(시설, '25.6월 완료) 목표 달성 - 냉·난방 신청서 통합 등을 통해 저소득가구 난방 36,592가구 및 냉방 18,073가구, 사회복지시설 난방 321개소 및 냉방 534개소 연대 적기 지원 완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에너지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고효율 보일러·에어컨 교체(보급)로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및 사용량 절감 등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연간 자금계획 수립

: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복권위원회로 제출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 작성·통보

②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복권위원회로 월별 자금교부 요청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수급상황을 감안 요청에 대한 조정 결과를 통보 → 복권위원회는 매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요일에 자금 교부

<집행절차>

부처		부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복권기금 (106,893백만원)	=> (106,893 백만원)	기후대응기금 (106,893백만원)	=> (106,893 백만원)	한국에너지재단 (106,893백만원)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지적) 저소득층의 단열·창호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우선으로 하여 추진할 것
 - (조치) 사업 추진 방식 개선을 통해 냉난방기 단독 신청 가구에도 단열·창호 등을 적극 연계 지원 추진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24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우수)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 획 액			계 획 현 액 (A)	집 행 액 (B)	집 행 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
2023	90,975	4,671	95,646	95,646	95,646	100.0	-	-
2024	108,333	-	108,333	108,333	108,333	100.0	-	-
2025	107,593	-	107,593	107,593	107,593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19) 영화발전기금 전출 (8925-841)
--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일반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25	841
명칭	기금간거래(전출금)	영화발전기금 전출	영화발전기금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십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영화발전 기금 전출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사업시행주체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영화발전 기금 전출	5,400	4,497	4,497	1,300	1,300	△3,197	△71.1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400	5,400	5,400	-	-	4,497	4,497	4,497	-	-	1,300
· 영화발전기금 전출	5,400	5,400	5,400	-	-	4,497	4,497	4,497	-	-	1,3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 전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복권·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4호

② 추진경위

- 2024년 장애인 관람환경 개선,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사업 복권기금 최초 전출
- 2025년 장애인 관람환경 개선 복권기금 2년 연속 전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4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5,400	4,497	1,3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사업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 사무처
- 사업 수혜자 : 장애인 등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장애인 관람환경 개선 : (2025 당초 계획) 4,497백만원 → (2026 계획) 1,300백만원, 3,197백만원 감액

- (요구)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한글자막·화면해설영화 제작에 필요한 적정예산 요구
- (산출) 한글자막·화면해설 영화 제작 1,3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연간 자금계획 수립

: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복권위원회로 제출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 작성·통보

② 기금사업 주체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복권위원회로 월별 자금교부 요청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수급상황을 감안 요청에 대한 조정 결과를 통보 → 복권위원회는 매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요일에 자금 교부

<집행절차>

부처		부처		주관기관 및 수행기관
복권기금 (1,300백만원)	=> (1,300 백만원)	영화발전기금 (1,300백만원)	=> (1,300 백만원)	영화진흥위원회 (1,300백만원)

8) 각종 평가: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
2023	-	-	-	-	-	-	-	-
2024	5,400	-	5,400	5,400	5,400	100.0	-	-
2025	4,497	-	4,497	4,497	4,497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2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9021 - 89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계정명	010	014
명칭				(계정구분 없을 시 공란)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000	9021	891
명칭	기금간거래(예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공자금관리 기금 예탁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70,000	158,231	158,231	300,000	300,000	141,769	89.6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70,000	70,000	70,000	-	-	158,231	158,231	158,231	-	-	300,000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70,000	70,000	70,000	-	-	158,231	158,231	158,231	-	-	30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일부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2) 사업개요

- ① 법령상 근거 :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8조(여유자금의 운용), 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제20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2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 ② 추진경위 : '12년부터 공자 예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2~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355,493	74,016	70,000	158,231	300,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사무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여유자금 300,000백만원 예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 획 액			계 획 현 액 (A)	집 행 액 (B)	집 행 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85,493	△30,000	355,493	355,493	298,693	84.0	-	56,800
2023	74,016	-	74,016	74,016	74,016	100.0	-	-
2024	70,000	-	70,000	70,000	70,000	100.0	-	-
2025	158,231	-	158,231	158,231	158,231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해당없음

사 업 명
(21) 한국은행예치 (9704 - 97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계정명	010	014
명칭				(계정구분 없을 시 공란)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4	970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한국은행예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한국은행 예치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한국은행 예치	1,950	100	100	100	10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9,825	149,825	205,411	-	-	155,341	130,032	59,507	-	-	211,817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149,825	149,825	205,411	-	-	155,341	130,032	59,507	-	-	211,81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기금 수입·지출을 위한 한국은행 계좌 운용
 - 연말 기금지원사업비 반납액 등 한국은행 예치금 잔액

2) 사업개요

- ①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8조(여유자금의 운용)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의 매입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에의 예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100	100	100	100	1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사무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12월 29일 이후에 한국은행 계좌에 반납되어 인출하지 못하는 불용액 예상 잔액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00	-	100	100	342	342.0	-	-
2023	100	-	100	100	269	269.0	-	-
2024	100	-	100	100	1950	1,950.0	-	-
2025	100	-	100	100	185	185.0	-	-

2) 주요 결산사항: 해당없음

사 업 명
(22)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704 - 97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계정명	010	014
명칭				(계정구분 없을 시 공란)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4	972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비통화금융 기관예치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05,411	155,341	130,032	215,933	211,817	56,476	36.4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9,825	149,825	205,411	-	-	155,341	130,032	59,507	-	-	211,817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149,825	149,825	205,411	-	-	155,341	130,032	59,507	-	-	211,81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권기금 여유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통한 기금 여유자금 관리
 -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여유자금 운용

2) 사업개요

- ①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8조(여유자금의 운용)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의 매입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예의 예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0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2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21,343	54,874	160,191	137,771	215,93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사무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6년도 수입-지출 차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8,354	△37,011	21,343	21,343	95,921	449.4	-	-
2023	39,311	15,563	54,874	54,874	169,314	308.6	-	-
2024	160,191	△10,366	149,825	149,825	205,411	137.1	-	-
2025	155,341	△25,309	130,032	130,032	209,159	160.9	-	-

2) 주요 결산사항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국회승인 (2025.5.1)	비통화금융기 관예치	470	03	△15,000	- 햇살론유스 사업 보증재원 확대 하기 위한 사업비 반영
국회승인 (2025.7.4.)	비통화금융기 관예치	470	03	△2,570	-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추가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 반영
협의변경 (2025.8.28.)	비통화금융기 관예치	470	03	△38,464	- 재난적의료비 지원 조건확대 및 사업 홍보 강화 등에 따른 소요 급증으로 '25.8월 중 사업비 부족 예상 및 사행 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확정·통보 (25.5월)한 "2025년 사행산업 중독예방 부담금" 반영 필요
자체변경 (2025.12.10.)	비통화금융기 관예치	470	03	△1,696	- 연말 연금복권 당첨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부족분에 대한 증액 변경 필요
자체변경 (2025.12.19.)	비통화금융기 관예치	470	03	+32,421	- 복권판매수입 증가에 따라 연동 되는 복권사업비 및 여유자금운용 규모 조정
합 계				△25,309	

사 업 명						
(23) 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운용 (9705 - 97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계정명	010	014
명칭				(계정구분 없을 시 공란)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5	974
명칭	여유자금운용	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운용	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운용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운용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운용	637,729	685,219	685,219	759,970	759,970	74,751	10.9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31,955	631,955	637,729	-	-	685,219	685,219	717,928	-	-	759,970
· 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운용	631,955	631,955	637,729	-	-	685,219	685,219	717,928	-	-	759,97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 연금식 복권 도입('11)에 따른 당첨금 지급 준비금은 자금 성격상 일반 여유자금과 엄격히 구분 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연금복권 당첨금 지급준비금 운용” 항목으로 분리하고 외부전문운용기관에 위탁 운영

- 수탁사업자는 향후 지급해야 할 총 당첨금(1등 20년간 16.8억원, 2등및보너스 10년간 1.2억원)의 현재가치로 할인된 금액*을 복권위원회에 예탁

* 최근 3개월('24.1~3월) 국고채 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 평균
: 1등 1,224백만원, 2등및보너스 102백만원

** 연금복권당첨금의 안정적 장기운용을 위해 복권위원회(복권기금)가 예수

*** 1등 20년간 16.8억원(월 7백만원), 2등및보너스 10년간 1.2억원(월 1백만원) 지급

※ '20년 연금복권제도 개편('20.4.24)에 따라 연금복권 720⁺ 추첨 시작('20.5.7)

1등 : 매월 5백만원 → 매월 7백만원 / 2등및보너스 등위 신설 : 매월 1백만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8조(당첨금 등)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당첨금의 분할 지급) ②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당첨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연금식복권 당첨금 지급준비금 관리지침 제4조
기금 재무관은 수탁사업자가 납부한 지급준비금을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선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함
- ② 추진경위 : '11.7.1 연금식 복권을 도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32,374	571,750	631,955	685,219	759,97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사무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6년말 예상 연금당첨금 지급준비금은 685,219백만원
(= '25년말 예상 운용액 685,219백만원 + '25년 예상 적립금 165,958백만원
- '26년 예상 교부금 93,204백만원 + '26년 예상 운용 수익금 1,997백만원)

4) 사업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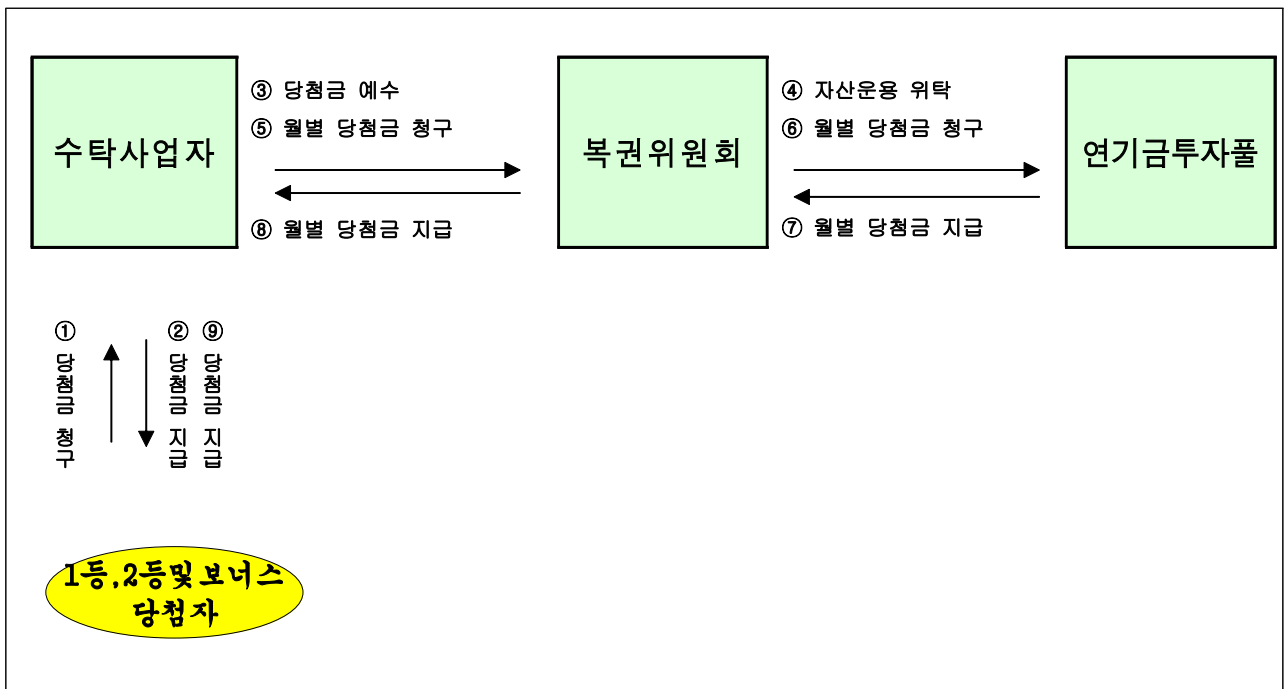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 획 액			계 획 현 액 (A)	집 행 액 (B)	집 행 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32,374	-	532,374	532,374	479,556	90.1	-	52,818
2023	571,750	-	571,750	571,750	548,857	96.0	-	22,893
2024	631,955	-	631,955	631,955	637,789	100.9	-	-
2025	685,219	-	685,219	685,219	717,928	104.8	-	-

2) 주요 결산사항: 해당없음

사 업 명 (24) 연금복권당첨금 지급분 교부 (9801 - 980)
--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계정명	010	014
명칭				(계정구분 없을 시 공란)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800	9801	980
명칭	차입금원금상환	연금복권당첨금 지급분 교부(복권기금)	연금복권당첨금 지급분 교부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연금복권당첨금 지급분 교부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사업시행주체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연금복권당첨금 지급분 교부	65,853	76,998	78,694	93,204	93,204	16,206	21.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6,282	66,282	65,853	-	429	76,998	78,694	78,588	-	106	93,204
· 연금복권당첨금 지급분 교부	66,282	66,282	65,853	-	429	76,998	78,694	78,588	-	106	93,20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연금복권당첨금 지급분 교부 : 복권위원회(복권기금)가 수탁사업자로부터 예수한 연금식 복권 당첨금을 당첨자에게 매월 지급*하도록 수탁사업자에게 매월 교부

* ('20.5월 개편) 1등 20년간(16.8억원) 매월 7백만원, 2등및보너스 10년간(1.2억원) 매월 1백만원

- 복권위원회는 당첨금 지급일정에 맞춰 국고채를 매입하고 상환되는 수익금을 수탁 사업자에게 교부

※ '20년 연금복권제도 개편('20.4.24)에 따라 연금복권 720⁺ 추첨 시작('20.5.7)

1등 : 매월 5백만원 → 매월 7백만원 / 2등및보너스 등위 신설 : 매월 1백만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8조(당첨금 등)③ 복권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첨금을 한꺼번에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동법시행령 제5조의2(당첨금의 분할 지급)
- ② 추진경위 : '11.7.1 연금식 복권을 도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5,240	54,222	66,282	76,998	93,20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복권위원회사무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연금복권당첨금 지급분 교부 : 총 93,204

① 연금복권 1등 당첨자에게 51,468백만원 지급 :

25년말 예상청구 337명×60(12개월, 5백만원) + 335명×84
(12개월, 7백만원) + 26년 예상당첨자 74명×42백만원 (6개월, 7백만원)
∴ 51,468 = 20,220 + 28,140 + 3,108

② 연금복권 2등및보너스 당첨자에게 총 41,736백만원 지급 :

25년말 예상청구 3,143명×12백만원(12개월, 1백만원) +
26년 예상당첨자 670명×6백만원(6개월, 1백만원)
∴ 40,980 = 31,776 + 4,020

* 연금복권 판매율(예상)은 '26년 71.54% 예상 ('24년 61.3%, '25년 69.9%)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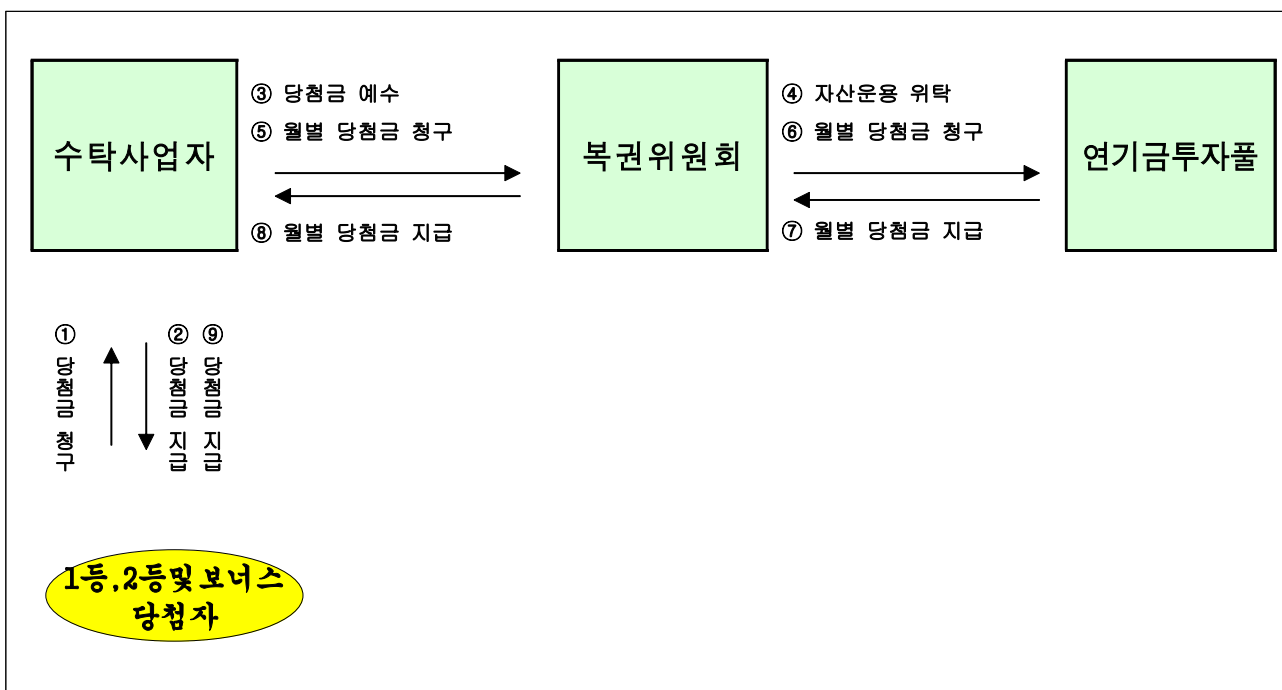
2022	· 1등 당첨자 53, 청구자 53명 / 2등및보너스 당첨자 522, 청구자 505명
2023	· 1등 당첨자 58, 청구자 58명 / 2등및보너스 당첨자 573, 청구자 561명
2024	· 1등 당첨자 71, 청구자 71명 / 2등및보너스 당첨자 596, 청구자 574명
2025	· 1등 당첨자 68, 청구자 65명 / 2등및보너스 당첨자 612, 청구자 576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 획 액			계 획 현 액 (A)	집 행 액 (B)	집 행 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5,240	-	45,240	45,240	42,490	93.9	-	2,750
2023	54,222	-	54,222	54,222	53,239	98.2	-	983
2024	66,282	-	66,282	66,282	65,853	99.3	-	429
2025	76,998	1,696	78,694	78,694	78,588	99.9	-	106

2) 주요 결산사항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025.12.10.)	비통화금융기 관예치	470	03	+1,696	- 연말 연금복권 당첨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부족 분에 대한 증액 변경 필요
합 계				+1,696	

사 업 명
(25)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지원 (6333-33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300	6333	330
명칭	복권기금운영(재해재난긴급구호)	기타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서천특화 시장 재건축 지원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정책국 사회재난정책과
		충청남도, 서천군 (충남개발공사 위탁)
	사업시행주체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지원	-	5,000	5,000	3,000	5,00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 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 년도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이월액 계 획 현 액	제 외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	-	5,000
· 서천특화시장재 건축지원	-	-	-	-	-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	-	5,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서천특화시장 화재('24. 1. 22(월) 23:08)로 대부분의 점포가 전소*됨에 따라 영세상인들의 조속한 생업복귀 및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신속한 시장 재건 필요
- * 292개 점포중 227개 점포 전소, 간접피해 65개점포(농산물동 47, 먹거리동 6)
- 임시시장을 개장('24.4.25.~ 227개 점포 입점)하여 운영중이나 간이 시설물로 장기간 운영 및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재건축 시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3항
-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 5항

② 추진경위

- '24.1월: 서천특화시장 화재 발생(292개 점포 중 227개 소실, 영업중단 53개) 및 재난안전대책본부·화재피해 통합지원센터 운영
- '24.2월 화재 건축물 해체 및 임시특화시장 조성공사 착공
- '24.3~10월: 재건축 기획 용역 추진 및 각종 심의 추진
- * 서천군-충남개발공사 업무대행 위·수탁 계약 체결 및 입찰공고
- '24.4월: 임시상설시장 개장 운영
- '25.3~5월 설계·시공 일괄입찰 심의 완료 및 우선시공 착공 및 실시설계 착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43,200백만원
- 사업기간 : '24. 1. ~ '27. 5.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8,500(지방비)	5,000(기금), 5,000(지방비)	5,000(기금), 19,700(지방비)

- 기타: 대지면적 16,545㎡, 연면적 9,785.66㎡, 지하 1층~지상 2층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자치단체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서천군
- 사업 수혜자 : 서천특화시장 영세상인, 시장 이용 군민 및 관광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5,000	정액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4,700백만원(3년차 사업비) × 20.2%(지자체 보조율) × 1개 시도 = 5,0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건축 공정률 (단위: %)	목표	-	-	신규	50	50	설계공정률 지표* + 공사공정률 지표+ 국비집행률 지표	- 설계공정률 (기본설계+실시설계) * 30% - 공사공정률 * 40% - 국비집행률 (국비집행액/50억원) * 30%	관련 공문, 착공서류 등
	실적	-	-	-	-	-			
	달성도	-	-	-	-	-			
입점상인 및 주민만족도 (단위: %)	목표	-	-	-	-	만족도 60이상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보통 이상인 60점을 목표치로 설정	- 방문객 만족도 * 50% - 상인 만족도 * 50%	설문조사
	실적	-	-	-	-	-			
	달성도	-	-	-	-	-			

* 각 지표 가중치: 설계공정률 30%, 공사공정률 40%, 국비집행률 30%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
2024	- 서천특화시장 화재 발생('24.1.22.) * 292개 점포 중 227개 소실, 영업중단 53개 - 재난안전대책본부('24.1.23.) 및 통합지원센터(행안부·충남·서천군 등) 운영('24.1.24.) - 임시시장 및 재건축 추진 MOU 체결('24.2.7., 도·서천군·건설사) - 화재 건축물 해체 및 임시특화시장 조성공사 추진('24.2.~4.) - 재건축 기획 용역 추진 및 각종 심의 추진('24.3.~10.)
2025	- 설계·시공 일괄입찰 심의 완료('25.3.) - 서천군 건축심의 완료('25.5.) - 우선 시공 착공 및 실시설계 착수('25.5.)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서천특화시장 재건축을 통해 영세상인들의 조속한 생업복귀 (297개 점포 297명)
- 서천군의 지역경제 중심지로 특화시장 재건을 통한 지역경제 안정화
 - 23년말 매출액 410억, 25년 재건축 이후 600억원 이상 기대
 - 23년말 이용객 432만명, 재건축 이후 600만명 이상 이용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4~'27	-	-	85	100	247	-	432

7) 사업 집행절차

사업추진체계	국고보조금 신청	충청남도 → 행정안전부
	신청서 검토 및 예산확보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충청남도 →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교부	행정안전부 → 충청남도
	보조금(국비+지방비) 교부	충청남도 → 서천군
	사후관리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서천군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5,000	-	5,000	-	5,000	5,000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 없음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100.0% 집행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해당 없음

사 업 명 (26)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구축 (6341-312)
--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080	082
명칭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300	6341	312
명칭	복권기금운영(취약계층지원)	금융취약계층 신용회복 법률지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십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개인회생· 파산종합 지원센터 구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사업시행주체	대한법률구조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개인회생·파산종합 지원센터 구축	-	1,285	3,885	2,570	2,570	1,285	100.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 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당초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1,285	3,855	3,855	3,855 [3,885]	3,855	3,855 [3,885]	-	-	2,570
· 개인회생·파산종합 지원센터 구축	-	-	-	-	-	1,285	3,855	3,855	3,855 [3,885]	3,855	3,855 [3,885]	-	-	2,57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내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시설 조성을 통한 금융취약계층의 신용회복 법률지원
 - (대상) 다중채무자, 불법사금융피해자, 소상공인, 전세사기피해자 등 금융취약계층
 - (목적) 경제적 회생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에게 복권기금 지원을 기반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법률구조, 신용회복 교육,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용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 취약 계층의 경제활동 복귀 및 사회안전망 확보
 - (내용) 개인회생·파산종합법률지원센터 구축 후 개인회생·파산 무료 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소송비용 지원) 및 상시 교육, 개인워크아웃, 취업지원, 재무설계 상담 등 신용회복 프로그램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법률구조법, 복권및복권기금법

- 법률구조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 체제를 구축·운영하고, 법률구조 관련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제4조(보조금의 지급)

- 정부는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과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제2항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국가부담의무】

-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호대상아동,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1조(사업)

-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법률구조
 2.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3. 준법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계몽사업
 4. 그 밖에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3항

-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② 추진경위

- 개인회생·파산 구조 활성화 방안 강구 【'05. 국회 국정감사】
- 개인회생·파산 사건 급증에 따른 대책 강구 【'06. 국회 국정감사】
- '09. 법무부 대통령 업무보고 【'08. 12.】
 - “경제회생을 위한 법적 지원(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설치)”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서울) 조기 개소 【'09. 1.】
 - 업무보고 시 대통령 실장 조기 개소 지시, 서초동 소재 전화상담실 임시 개조
-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다자간 업무제휴 【'09. 4.】
 - 대한법률구조공단(개인회생·파산 법률구조), 보건복지가족부(재무설계), 자산관리 공사(고금리 사채 전환대출),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
- '10 복권기금 사업 선정, 대구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 【'10. 6】
- '11 복권기금 사업 선정, 부산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 【'11. 6】
- '12 복권기금 사업 선정, 광주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 【'12. 8】
- '13 복권기금 사업 선정, 대전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 【'13. 7】
- 대통령 지시사항 【법무부 대통령 업무보고 '13. 4.】
 - “법을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확대 필요”
- '14 복권기금 사업 선정, 수원, 울산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 【'14. 6.】
- 대통령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강구 지시 【'23. 11.】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강화
- 인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구축 【'25. 7. 개소】
- 의정부·창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구축 【'25. 12. 개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3,855	2,570

- 기타 : 금융취약계층의 신용회복 법률지원을 위하여 '09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내 총 10개의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구축·운영, '26년 신규 2개(전주, 제주) 구축 중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 사업 수혜자 : 대중채무자, 불법사금융피해자, 소상공인, 전세사기피해자 등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
-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보조	대한법률 구조공단	2,570백만원	100	법률구조법 제2조의2, 제4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570백만원 = ①2개 기관(전주·제주) x ②254㎡ x ③5,058천원
- ① 관할 인구수, 개인회생·파산 사건수, 지역적 형평성 등 고려 선정 기관
 - ② 정부청사관리규정 청사시설 기준표에 따른 소요 면적
 - ③ 법원 주변 구분건물 시세 등 고려한 ㎡당 단가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법률지원 수혜자 수 (단위: 건)	목표				8,310	24,997	3년 평균 실적에 센터 개소 시점 (하반기) 고려하여 가·감	법률구조 건수 + 법률상담 건수 + 교육 건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산통계프로그램
	실적				9,005	-			
	달성도				108.4	-			
고객만족도 (단위: %)	목표				90.6	92.0	3년 평균 실적에 센터 개소 고려하여 0.3점 가산	직원별 12표본에 대해 10점 척도 만족도 조사 결과 (최고점, 최저점 제외)	대한법률구조공단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실적				92.3	-			
	달성도				101.9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
2024	-
2025	인천, 창원, 의정부 지원센터 구축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전주·제주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구축 시 연간 1,323건*의 법률구조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23~'25년 평균 전주·제주지부 개인회생·파산 건수 x 센터 개소 시점(7.1.) 고려하여 50% 가산
= (644건 + 856건 + 1,146건) ÷ 3 x 150% = 1,32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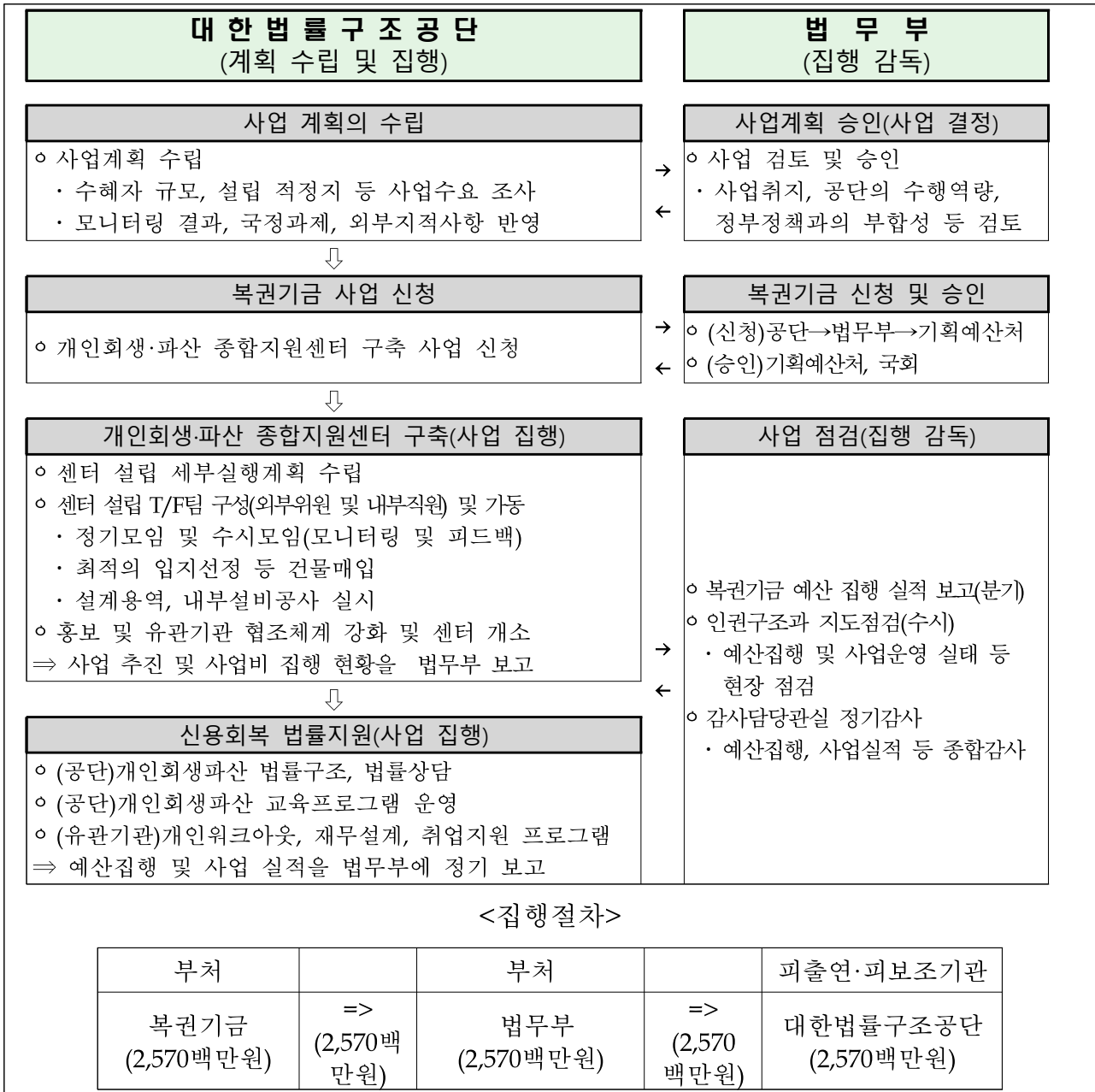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8) 각종 평가 : 해당 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 획 액			계 획 현 액 (A)	집 행 액 (B)	집 행 률 (B/A)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 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
2023	-	-	-	-	-	-	-	-
2024	-	-	-	-	-	-	-	-
2025	1,285	2,570	3,855	-	3,855	3,855	100.0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2023	-
2024	-
2025	- 의정부·창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추경 예산 2,570백만원 편성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국회의결 (2025.7.4)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구축	320	07	2,570	-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개인 회생·파산 지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법률 취약계층의 신용 회복 및 법률지원을 위해 개인회생· 파산종합지원센터를 추가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 반영
합 계				2,570	

사 업 명
(27)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6346-32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80	082
명칭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300	6346	328
명칭	취약계층지원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사업시행주체	서민금융진흥원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166,969	165,738	165,738	350,000	350,000	184,262	111.2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 획
	계 획 액 (수 정)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실 집 행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실 집 행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제 외		이 월 예 상 액	불 용 예 상 액	
						당 초	수 정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실 집 행 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6,969	166,969	166,969 [166,969]	-	-	165,738	165,738	165,738	165,738 [165,738]	165,738	165,738 [165,738]	-	-	350,000
·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166,969	166,969	166,969 [166,969]	-	-	165,738	165,738	165,738	165,738 [165,738]	165,738	165,738 [165,738]	-	-	-
· 햇살론 특례보증	-	-	-	-	-	-	-	-	-	-	-	-	-	303,900
· 햇살론유스	-	-	-	-	-	-	-	-	-	-	-	-	-	46,1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에게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대출을 공급하여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
- 저소득 대학생·청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학업·취업에 전념하여 향후 제도권 금융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3호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1~2. (생략)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5. (생략)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55조의2제2항제1호

제24조(진흥원의 업무)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3. (생략)

4.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5~16. (생략)

제47조(보완계정의 조성) ① 보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8. (생략)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②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8. (생략)

② 추진경위

- 기존 정부 출연금(복권기금, 일반회계) 및 민간 출연금으로 지원하던 5개의 서민 금융진흥원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일반, 특례, 유스 3개 상품으로 통합 추진

* (민간+정부)근로자햇살론 + (민간)햇살론뱅크 → (민간)햇살론 일반보증
(민간+정부)햇살론15 + (정부)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정부)햇살론 특례보증
(정부)햇살론유스 → (정부)햇살론유스(현행 유지)

- 정부재정 총 4,797억원(일반회계 1,297억원 + 복권기금 3,500억원)을 출연받아 햇살론 특례보증에 4,336억원(일반회계 1,297억원 + 복권기금 3,039억원), 햇살론유스에 461억원(복권기금) 투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1 ~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00,531	167,484	166,969	165,738	350,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서민금융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저소득·저신용층* 및 저소득 청년층**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인 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만 34세이하 인 대학(원)생,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내), 청년사업자(창업 1년 이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햇살론 특례보증	출연	서민금융 진흥원	303,900	100.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3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47조제1항제1호
햇살론유스	출연	서민금융 진흥원	46,100	100.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3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55조의2제2항제1호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5년) 165,738 → ('26년) 350,000백만원

- (요구) 햇살론 특례보증 공급을 위한 보증 자원, 햇살론유스 공급 및 사회적 배려대상 이차보전을 위한 자원
- (산출) 350,000백만원 = 햇살론 특례보증 303,900백만원 + 햇살론유스 46,100백만원
 - 햇살론 특례보증 303,900백만원 = 햇살론 특례 보증자원 403,900백만원 - 일반회계로 조달하는 보증자원 100,000백만원
 - 햇살론유스 46,100백만원 = 햇살론유스 공급을 위한 보증자원 441억원 + 사회적배려대상 이차보전 20억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햇살론 특례보증 전체 공급건수 대비 취약계층에 대한 공급건수 (단위: %)	목표	-	-	-	-	7.3	'25년 상반기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보증료 인하 비중	취약계층*에 대한 보증료 인하가 이루어진 햇살론 특례보증 공급건수 / 햇살론 특례보증 전체 공급건수 * 사회적배려대상자 등 보증료 인하 대상	서민금융진흥원 통계자료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금융애로를 겪던 취약계층 및 저소득 청년층이 불법사금융 대신 햇살론 특례보증 및 햇살론유스를 이용함으로써, 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고금리로 인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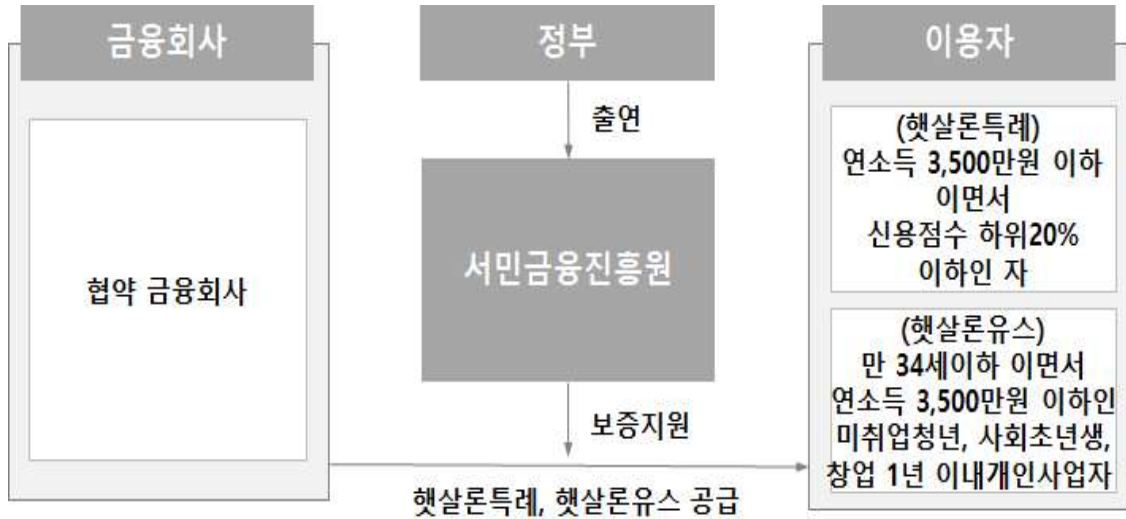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서민금융진흥원에 재원 출연, 서민금융진흥원은 동 재원을 활용하여 저소득·저신용층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동 보증을 담보로 대출을 공급

< 햇살론 특례보증 및 햇살론유스 지원 구조 >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70,531	30,000	200,531	-	200,531	200,531	100.0	100.0	-	-
2023	167,484	-	167,484	-	167,484	167,484	100.0	100.0	-	-
2024	166,969	-	166,969	-	166,969	166,969	100.0	100.0	-	-
2025	165,738	-	165,738	-	165,738	165,738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22	170,531	200,531	200,531	200,531	-	200,531	200,531	-	-	100.0
2023	167,484	167,484	167,484	167,484	-	167,484	167,484	-	-	100.0
2024	166,969	166,969	166,969	166,969	-	166,969	166,969	-	-	100.0
2025	165,738	165,738	165,738	165,738	-	165,738	165,738	-	-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근로자햇살론 공급 0.2조원 확대를 위해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300억원 추가
2023	- 해당사항 없음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8)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사업 (6352 - 33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080	082
명칭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300	6352	334
명칭	복권기금운영(취약계층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사업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사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 지원 사업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사무처 기금사업과
	사업시행주체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지원 사업	2,015	2,117	2,117	2,369	2,369	252	11.9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 (합계)	2,015	2,015	2,015	-	-	2,117	2,117	2,117	-	-	2,369
· 양성평등기금 전출	2,015	2,015	2,015	-	-	2,117	2,117	2,117	-	-	2,36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문제행동 또는 정서불안 아동에 대한 각종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치료 재활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 및 시행령 제35조

* 「아동복지법」제35조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시작년도 : 2012년
- 시설 아동은 민감한 시기에 유기, 부모의 학대, 질병, 빈곤 등으로 분리 경험이 있어 일반 아동보다 문제행동 비율이 높으며 조기 치료 필요
- 국정감사(’09년, ’10년)에서 시설 입소 아동의 치료·재활을 위하여 전문화된 프로그램 보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209	2,371	2,015	2,117	2,369

- 기타: 당해 연도에 심리치료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아동 중 시설장이 추천한 아동 1,500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100%)
- 사업시행주체 : 아동권리보장원
- 사업 수혜자 :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중 정서장애 또는 문제행동 아동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지원 사업	보조	아동권리 보장원	2,369백만원	복권기금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 2,369백만원

가. 검사비

- 사전검사 2,500부×6,000원 = 15백만원
- 사후검사 1,500부×6,000원 = 9백만원
- 종합검사 750명×300천원 = 225백만원

나. 치료프로그램비

- 재활 1,500명×60천원×20회 = 1,800백만원
- 주양육자 570명×100천원 = 57백만원
- 원가족 150명×600천원 = 90백만원

다. 운영경비

- 인건비 4명×33백만원 = 130백만원
- 운영비 13백만원
- 효과성연구 20백만원
- 간담회 2회×3백만원 = 7백만원
- 종사자교육 2명 X 10회 X 150천원 = 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시설아동 문제행동 치료를 (%)	목표	41.5	40.6	42.4	-	-	-	k-CBCL 정상범위 아동수/사업 참여자수*100	사전-사후 온라인 검사지 배부
	실적	41.6	42.2	52.1	-	-			
	달성도	100.2	103.9	122.9	-	-			
보호아동 심리정서 개선율 (%)	목표	-	-	-	60.7	60.4	최근 4개년 (‘22~’25년)의 실적치 평균	K-CBCL 문제행동 감소 아동수/사업 참여자수*100	사전-사후 온라인 검사지 배부
	실적	55.2	66.6	60.3	59.5	-			
	달성도	-	-	-	98.0	-			
아동-원가족 관계 개선도 (점)	목표	34.4	37.6	41.3	45.9	42.6	최근 4개년 (‘22~’25년)의 실적치 평균	가족관계증진 척도(가족관계 척도+애착관계 척도)의 사전-사후검사 비교결과 향상점수의 합계 (100점 환산)	사전-사후 평가척도 배부
	실적	42.1	40.8	45.5	42.1	-			
	달성도	122.4	108.5	110.2	91.7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아동치료 및 재활 1,513명 지원, 역량강화(종사자 교육·원가족 프로그램 등) 지원
2023	아동치료 및 재활 1,686명 지원, 역량강화(종사자 교육·원가족 프로그램 등) 지원
2024	아동치료 및 재활 1,601명 지원, 역량강화(종사자 교육·원가족 프로그램 등) 지원
2025	아동치료 및 재활 1,500명 지원, 역량강화(종사자 교육·원가족 프로그램 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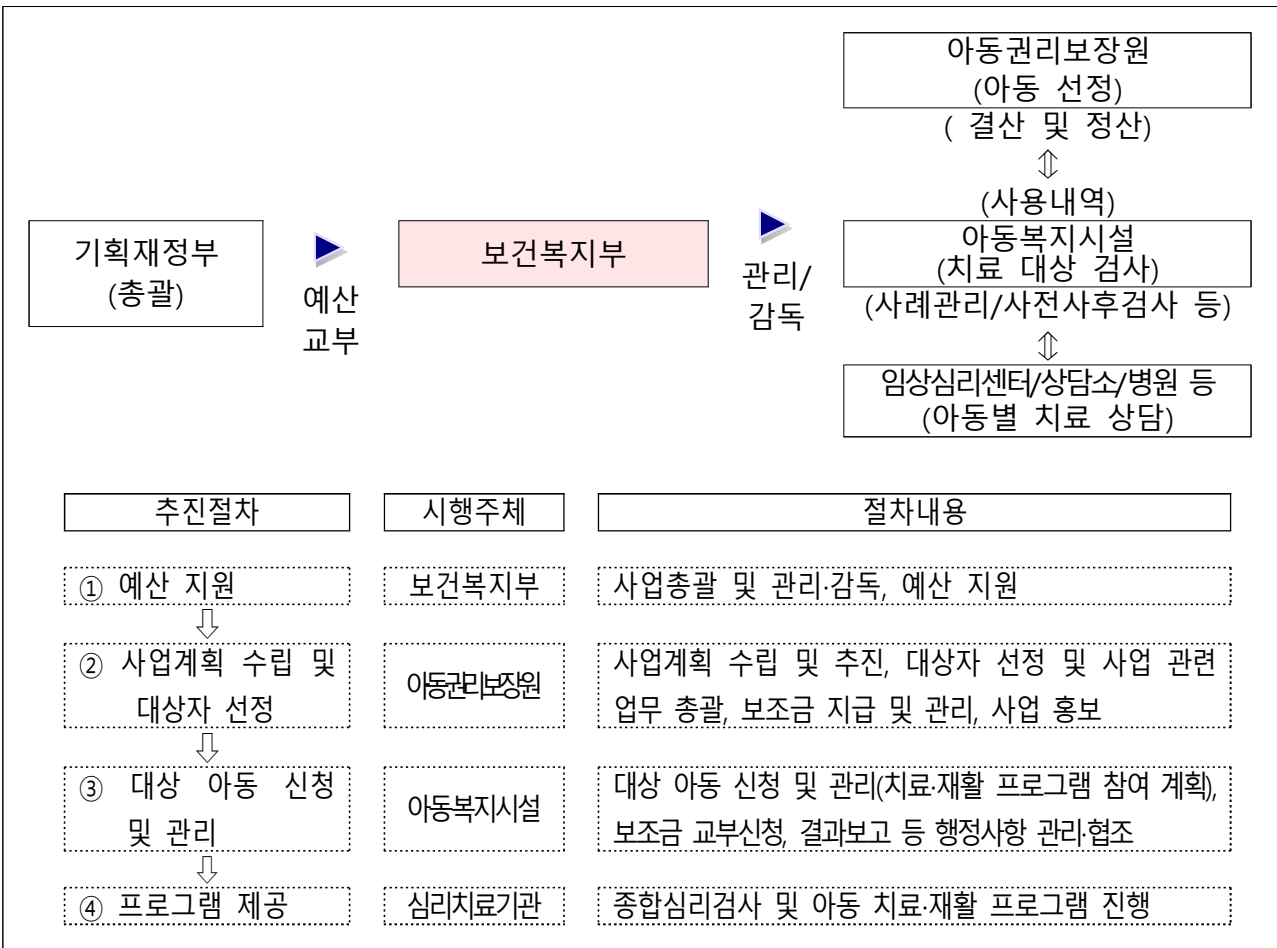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시설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초기 단계에 문제행동 등 심리·정서적 지원하여 아동이 성장하여 성년이 된 이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절감
- 1,500여명 이상의 아동에게 치료재활서비스 지원하여 건전한 성장·자립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					
2022	2,209	-	2,209	2,209	2,209	100.0	-	-
2023	2,371	-	2,371	2,371	2,371	100.0	-	-
2024	2,015	-	2,015	2,015	2,015	100.0	-	-
2025	2,117	-	2,117	2,117	2,117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 해당없음

2022	해당 없음
2023	해당 없음
2024	해당 없음
2025	해당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29) 재난적의료비 지원 (6362 - 34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80	082
명칭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300	6362	344
명칭	복권기금운영(취약계층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사무처 기금사업과
	사업시행주체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상한제운영부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85,769	76,473	114,873	85,769	85,769	9,296	12.2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85,769	85,769	85,769	-	-	76,473	114,873	114,873	-	-	85,769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85,769	85,769	85,769	-	-	76,473	114,873	114,873	-	-	85,76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목적

- 소득 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 이용 접근성 향상 및 국민건강 보호 강화

□ 사업내용

- 모든 질환에 대해 소득 하위 50% 중심으로 의료비가 소득 수준 대비 과도한 경우, 의료비 부담액의 50~80%를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 ② 추진경위
 - ('13.8월~'17년)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시행
 - 4대 중증질환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한시적('13~'15년)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나, 제도의 지속 시행요구가 높아 '17년까지 연장 운영
 - ('17.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9)을 통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질환 구분 없이 소득하위 50%로 확대 계획 발표

<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내용 >

③-1.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및 대상 확대

- (현행) 4대 중증질환 저소득가구에 한정하여 한시적으로 의료비지원사업 추진('17년 종료)
- (개선) 질환 구분 없이 소득하위 50%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비급여 포함 의료비 최대 2천만원 지원
 - 개별심사제도를 신설하여 기준을 다소 완화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8.1.16. 공포, '18.7.1. 시행)으로 재난적의료비지원 제도화 및 지원 확대 : '18년
 - * 주요 확대내용 : 대상질환(4대 중증질환 입원 중심 → 모든 질환), 지원범위(소득하위 40% → 50%이하 중심), 지원금액, 지원금액 상향 등
-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신청 가능한 본인부담 의료비 기준금액 인하*로 지급대상 확대('21.1월~)
 - * ▲(기초·차상위) 100 → 80만원 / ▲(기준중위 ~ 50%) 200 → 160만원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상향(연간 2천만원→3천만원)으로 의료안전망을 더욱 강화('21.11월~)
 - * (기존) 일괄 50% → (개선) 소득에 따라 50~80% 차등 지원
 -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70%,
 - ▲ 기준중위소득 50 ~ 100% : 60%, ▲ 기준중위소득 100 ~ 200% : 50%
- '22. 12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23.1.1 시행)
 - *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 재산(기존 5.4억원 이하 → 개편 7억원 이하), 의료비기준 완화(기존 15% → 개편 10% 초과 시)
- '23. 3월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적용 확대
- '23. 5월 연간 지원한도 상향(3천만원 → 5천만원)
- '24. 1월 동일질환 합산 → 모든 질환 대상 1인당 발생 의료비 합산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4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9,975	61,568	85,769	114,873	85,76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업 수혜자 : 소득 하위 50% 가구 중심으로 재난적의료비 발생 가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민간경 상보조	국민건강 보험공단	85,769백만원	100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재난적의료비 지원 :
 $85,769\text{백만원} = 50,735\text{건} \times 3,120\text{천원} \times 64\%(\text{기금+일반회계 비율})$
 - 10,464백만원(일반회계 지원)
 - 5,075백만원('24년 복권기금 지원수준으로 조정)
 - * 지원건수 및 지원단가는 '24년 수준 반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재난적의료비 지원 보장률 (단위: %)	목표	10.0	11.6	12.2	12.5	12.9	'25년 목표치 달성으로 가정, β 분포 방식 활용한 추정값에 5년 평균증가율을 반영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 총진료비×100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산출
	실적	11.3	12.1	12.8	-	-			
	달성도	113	104	105	-	-			
재난적의료비 만족도 (단위: %)	목표	83.6	84.3	86.38	88.26	88.30	'25년 목표치 달성으로 가정하고, '만족' 및 '매우만족' 답변의 3년('23-'25년) 평균치로 목표치 설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만족도조사 중 '만족' 및 '매우만족' 답변율×100%	국민건강보험공 단을 통하여 산출
	실적	88.24	90.17	86.34	-	-			
	달성도	105	106	99.9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해당없음
2023	○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 및 지원한도(기존 3천만원→5천만원) 상향 *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 재산(기존5.4억원 이하 → 개편7억원 이하), 의료비기준 완화(기존15% → 개편10% 초과 시),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적용 확대
2024	○ 재난적의료비 합산 방식 변경 - 동일질환 합산 → 모든 질환 대상 1인당 발생 의료비 합산
2025	○ 타 의료비지원사업으로 인해 지원범위의 금액이 중복차감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소득 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 수행
- 재난적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질환 발병 시 신속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므로 의료 이용 접근성 향상 및 국민건강보호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보건복지부) 계획수립 및 총괄, 복권기금 교부계획 수립 및 교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 운영, 복권기금 집행 및 관리						
<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지급절차 개요 >						
퇴원후 지급신청 (원칙)	지급신청	자격심사	(개별심사)	지급결정	지급의뢰	지급
	환자	지사	지역별 실무위원회	지사	지사	본부
입원중 지급신청 (예외)	지원신청	자격심사	청구	지급결정	지급의뢰	지급
	환자	지사	환자 (의료기관)	지사	지사	본부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 획 액			계 획 현 액 (A)	집 행 액 (B)	집 행 률 (B/A)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					
2022	39,975	-	39,975	39,975	36,735	91.9	-	3,240
2023	56,754	4,814	61,568	61,568	61,568	100.0	-	-
2024	68,451	17,318	85,769	85,769	85,769	100.0	-	-
2025	76,473	38,400	114,873	114,873	114,873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30) 입양아동 가족지원 (6364-34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80	082
명칭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	6364	346
명칭	복권기금운영(취약계층지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서울40, 지방70 (평택시 8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입양아동 가족지원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사무처 기금사업과
	사업시행주체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입양아동 가족지원	20,843	21,347	21,347	19,358	19,358	△1,989	△9.3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 (합계)	20,843	20,843	20,843 [19,824]	-	-	21,347	21,347	21,347 [19,083]	-	-	19,358
·입양아동가족지원	20,843	20,843	20,843 [19,824]	-	-	21,347	21,347	21,347 [19,083]	-	-	19,35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입양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입양비용 지원을 통해 국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동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을 통해 아동의 원 가정 양육 보호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32조

제6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없다면 그와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 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

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상호적응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 및 시행
7.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제32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 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일반회계>

- 1996년 : 장애아동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 지원 시작
- 2005년 : 입양특례법 개정('05. 3. 31.)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입양장려금 지원근거 규정 마련
- * 보건복지 상임위('05년) 예산심의과정에서 입양장려금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예결위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
- 2007년 : 「국내입양 활성화 대책」 수립 및 추진
- *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수수료 지원 사업 도입
- 2008년 :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 등 국내보호 강화대책 수립 및 추진
- 2010년 : 장애아동 입양양육수당 차등지원 도입(경증 55.1만원/월, 중증 57만원/월)
- 2011년 : 중증 장애아동 입양양육수당 상향조정(57 → 62.7만원/월)
- 2012년 : 입양아동 양육수당 상향조정(10만원 → 15만원)
- 2013년 : 아동의 원가정 우선보호를 위해 입양철회비용 및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 사업 도입

<복권기금 이관('14)>

- 2014년 :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만 13세 미만 → 만 14세 미만)

- 2015년 :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만 14세 미만 → 만 15세 미만)
- 2016년 :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만 15세 미만 → 만 16세 미만)
- 2020년 :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만 16세 미만 → 만 17세 미만)
- 2021년 :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만 17세 미만 → 만 18세 미만)
- 2022년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단가 인상(월 15만원→월 20만원) 및 입양축하금 국비 지원 신설(1회, 200만원)
- 2025년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단가 15% 인상(심한 장애 : 62.7 → 72.1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등 : 55.1 → 63.4만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4~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832	22,469	20,222	21,347	19,35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내입양을 한 입양가정, 입양아동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입양아동 가족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19,358 백만원	서울40, 지방70 (평택 8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6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자치단체보조(330-01) : **19,358백만원**

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사업비 17,274백만원

- (서울) 1,588명 × 200천원 × 12개월 × 40%
- (지방) 9,375명 × 200천원 × 12개월 × 70%

②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사업비 1,462백만원

- 양육보조금 지원 : 사업비 1,335백만원(247명)
 - (서울){(17명×634천원)+(28명×721천원)} × 12개월 × 40%
 - (지방){(51명×634천원)+(151명×721천원)} × 12개월 × 70%
- 의료비 지원 : 사업비 127백만원(130명)
 - (서울) 30명 × 1,550천원 × 40%
 - (지방) 100명 × 1,550천원 × 70%
- ③ 입양비용 : 사업비 179백만원
 - (서울) 32명×1,000천원×40%
 - (지방) 238명×1,000천원×70%
- ④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사업비 84백만원
 - (서울) 39명×1400천원×40%
 - (지방) 63명×1400천원×70%
- ⑤ 입양축하금 지원 : 사업비 359백만원
 - (서울) 32명×2,000천원×40%
 - (지방) 238명×2,000천원×7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내입양 추진비율 (단위:%)	목표	54.1	54.8	60.4	66.7	67.8	최근 3년 실적치 평균 * 직전연도 가중치 부여	국내입양아동수/ (국내입양아동수+ 국외입양아동수) ×100	전국 입양기관 입양현황 통계
	실적	56.2	65.5	72.6	집계중	-			
	달성도	103.9	119.5	120.2	-	-			
입양양육수당의 아동 양육에 도움 정도 (단위:점)	목표	신규	69.4	70.4	70.7	71	최근 3개년의 실적치* 평균 적용, 직전연도 실적에 가중치** * ('22)72.0 ** 25% 25% 50% 적용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 환산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실적	신규	70.1	72.8	집계중	-			
	달성도	신규	103	103.4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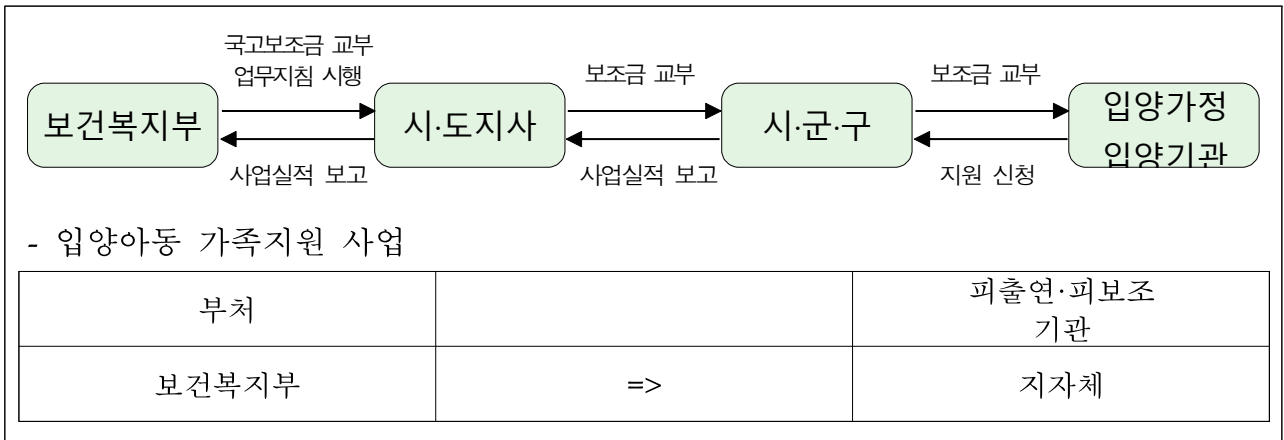
2022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단가 인상 * (~'21년) 월 15만원 → ('22년~) 월 20만원 - 입양축하금 지원 신설 * 200만원, 1회 지급
------	--

2023	- 「국내입양에관한특별법」 전부개정 및 「국제입양에관한법률」 제정 (’23.7.18 제·개정, ’25.7.19시행)
2024	- 해당없음
2025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단가 15% 인상 * 중증 62.7 → 72.1만원, 경증 등 55.1 → 63.4만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					
2022	23,832	-	23,832	23,832	23,832	100.0	-	-
2023	22,469	-	22,469	22,469	22,469	100.0	-	-
2024	20,222	-	20,843	20,843	20,843	100.0	-	-
2025	21,347	-	21,347	21,347	21,347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

사 업 명
(31)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6365 - 34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80	082
명칭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300	6365	347
명칭	복권기금운영(취약계층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사무처 기금사업과
	사업시행주체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4,745	4,599	4,599	4,082	4,082	△517	△11.2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770	4,770	4,745	-	25	4,599	4,599	4,299	-	300	4,082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4,770	4,770	4,745	-	25	4,599	4,599	4,299	-	300	4,08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노후된 아동복지시설의 개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종류) 및 제59조(비용보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4(시설의 안전점검 등)
- ② 추진경위
 - 시작년도 : 1990년 ~
 -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은 아동의 안전,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국가의 지원은 필수적임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90~,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300	5,300	4,770	4,599	4,08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아동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	지자체 보조	4,082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4,082백만원

가. 개축 : 2,588백만원

- 10개소 × 181.3m² × 2,855천원 × 보조율 50% = 2,588백만원

나. 개보수 : 1,394백만원

- 1식 × 2,788백만원 × 보조율 50% = 1,394백만원

다. 장비보강 : 100백만원

- 20개소 × 10백만원 × 보조율 50% = 1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아동복지시설 1실당 거주 아동 수 (단위: 명)	목표	3	3	3	2.5	2.3	아동복지법 상 1 실당 거주아동수 기준으로 목표 설정(하향지표) - 1인실 확충 등을 반영하여 2.3명으로 목표 상향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수 / 아동복지시설 거주 방 개수	지방자치단체 수합
	실적	2.1	1.8	1.7	-	-			
	달성도	100	100	100	-	-			

환경개선 만족도 (단위: 점)	목표	90	90	90	90	90	아동의 주관에 따라 좌우되어 추세 적용이 어 려운 점 및 만족 도의 일정수준 유지가 필요한 점 등 감안 목표 치 유지	기능보강이 완료된 시설의 아동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실적	90	88	93.6	-	-			
	달성도	100	97.8	104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증·개축(4개소), 개·보수(58개소), 장비보강(12개소)
2023	증·개축(1개소), 개·보수(94개소), 장비보강(15개소)
2024	증·개축(5개소), 개·보수(36개소), 장비보강(6개소)
2025	증·개축(1개소), 개·보수(83개소), 장비보강(50개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기능보강 지원을 통해 시설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실제 수혜자인 아동의 시설 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 달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단위 : 백만원)					
부처 (기금관리기관)	사업시행주체	=>	피출연·피보조 기관	=>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보건복지부 (4,599)	(4,599)	지방자치단체 (없음*)	(4,599)	아동복지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 수행 시 피보조기관 직접 집행액이 발생할 수 있음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					
2022	5,300	-	5,300	5,300	5,211	98.3	-	89
2023	5,300	-	5,300	5,300	5,191	97.9	-	109
2024	4,770	-	4,770	4,770	4,745	99.5	-	25
2025	4,599	-	4,599	4,599	4,299	93.5	-	3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월/불용) 사업 지연, 집행잔액
2023	- (이월/불용) 사업 지연, 집행잔액
2024	- (이월/불용) 사업 지연, 집행잔액
2025	- (이월/불용) 사업 지연, 집행잔액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32)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6372-35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80	082
명칭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300	6372	352
명칭	복권기금운영(취약계층지원)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교육부 학생지원국 학생지원총괄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장학재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32,413	25,825	25,825	37,097	37,097	11,272	43.6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2,413	32,413	32,413	-	-	25,825	25,825	25,825	25,825	25,825	37,097
·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32,413	32,413	32,413	-	-	25,825	25,825	25,825	25,825	25,825	37,09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저소득층 장학사업지원) 저소득층 우수 초·중·고생을 발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제도를 통해 교육의 희망사다리 기능 강화
- (선발대상) 초등학교(5~6학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생* 중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가정** 혹은 다문화 가정*** 혹은 긴급구난사유**** 해당 학생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단, 고등공민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제외)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가정」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
- ※ 대학생은 별도 선발 없이 계속 장학생(고3)이 대학 진학 시 지원
- (지원인원) '26년 신규 장학생 3,000명 선발을 포함 약 11,851명 지원*
 - * '26년 신규 장학생 3,000명 + 기존 장학생 중 계속 지원 장학생 8,851명
- (지원내용) 매월 장학금* 지원 외에 1:1멘토링, 진로 상담 등 교육 프로그램 제공
 - * [초] 15만 원 [중] 25만 원 [고] 35만 원 [대] 45만 원
- ※ 긴급한 사유로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을 SOS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10개월간(월 30만원) 한시적으로 지원(1,500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제28조(장학제도)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조(국가의 책무) 등

② 추진경위

- ('18. 8.) 복권기금 등을 활용한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프로젝트* 추진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교육부), 체육진흥기금 장학사업(문체부) 등 포함
- ('18. 1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재단의 학자금 지원 범위 확대(대학생 → 대+초·중·고)를 통한 사업수행 근거 마련
- ('19. 9.) 예비타당성 평가 통과
- ('20. 1.)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출연 협약식 개최(원금보전성 기금 3,500억 원 출연 협약)
- ('25.7.) 사회이동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초등학생(5,6학년)까지 선발 범위 확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신규, 시범사업)~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6,079	115,386	32,413	25,825	37,09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 사업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초·중·고·대학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출연	한국장학 재단	37,097	100.0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37097백만원 (사업비 36387백만원 +운영비 710백만원)

○ 사업비: 36,387백만원

가. 장학금: 30,840백만원

- 계속장학생(8,851명): 39,060백만원
(초) 15만원×475명×12개월 = 855백만원
(중) 25만원×1,418명×12개월 = 4,254백만원
(고) 35만원×3,019명×12개월 = 12,680백만원
(대) 45만원×3,939명×12개월 = 21,271백만원
- 신규장학생(3,000명): 4,500백만원
(초) 15만원×1,000명×6개월 = 900백만원
(중) 25만원×1,000명×6개월 = 1,500백만원
(고) 35만원×1,000명×6개월 = 2,100백만원
- 원금보전성 기금 운용수익금 차감: △12,720백만원
(운용수익금) '24년 발생한 운용수익금(12,720백만원)은 '26년 사업비(장학금)로 활용
※ 「복권기금 저소득층 장학사업 원금보전성 기금관리 업무처리기준("22.1.)」 제6조(기금 운용수익의 활용) 기금운용수익은 차차년도 장학사업에 사용

나. 교육 프로그램: 5,547백만원

- 멘토링 활동지원비: 3,077백만원
(계속) 4,912명×12만원×4회=2,357백만원
(신규) 3,000명×12만원×2회=720백만원
- 교육 프로그램: 11,851명×20.84만원×1회=2,470백만원

○ 운영비 : 710백만원

가. 전산유지보수: 824만원×2명×12개월=198백만원

나. 심사·위원회 운영: 174백만원

(심사비) 5명×0.5만원×6,500건=163백만원

(위원회) 7명×40만원×4회=11백만원

다. 도급인력: 232만원×7명×12개월=195백만원

라. 연구비. 50백만원

마. 기타운영비(설명회·간담회,(63) 홍보비(30): 9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장학생 성장정도 (단위: 점)	목표	3,900	3,884	3,895	3,911	3,965	$Y = \frac{Y_a + 3Y_m + Y_b}{5}$ (Ya: 최근 5년간 최저치, Ym: 직전년도 실적치, Yb: 최근 5년간 최고치)	장학생 성장지수 측정 지표 구성(5점 척도) ※ 인지적 성장, 정의적 성장, 진로 성장	장학생 대상 설문조사 실시
	실적	3,884	3,902	3,930	3,985	-			
	달성도	99.6%	100%	100%	1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신규 장학생 2,000명 선발 및 계속 장학생 2,924명 등, 총 4,924명 지원
2023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신규 장학생 2,000명 선발 및 계속 장학생 4,538명 등, 총 6,538명 지원
2024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신규 장학생 2,000명 선발 및 계속 장학생 5,856명 등, 총 7,856명 지원
2025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신규 장학생 3,000명 선발 및 계속 장학생 6,959명 등, 총 9,959명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 장학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의 교육 결핍 조기 해소 및 계층이동의 희망사다리 기능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타당성조사 :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17. 교육부)

- ◆ (교육격차 인식) 응답자의 93.9%가 지역·계층간 교육격차가 크다고 답했으며, 87%가 과거에 비해 격차가 커졌다고 응답
- ◆ (교육격차 원인) 교육비 투자 차이, 부모의 관심과 개입 정도, 지역별 교육여건 차이를 주된 원인으로 응답
※ 응답자 모두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교육비 투자'를 선택했으며, 두 번째 원인으로 교사는 '부모의 관심과 개입'을 학부모·일반국민은 '지역별 여건'을 선택
- ◆ (정책 방향) 기초학력 보장(25.7%), 가난해도 재능 있는 학생 지원(15.6%),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12.9%) 순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유무 및 그 결과

- '18년도 제4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19.1.) 및 통과('19.8.)

구분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 및 진행상황
예비타당성 조사	KDI	'19.01~'19.08	○ (결과) 통과(B) - 경제사회 환경분석(80점), 사업설계 적정성(74.8점), 비용-효과성(76.1점)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기본계획 수립·확정	교육부 재단	· (교육부) 기본계획 수립 · (재단)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수립
↓		
선발계획 공고	재단	· 각 학교에 장학생 추천 요청 · 복권기금 활용 저소득층 장학제도 홍보
↓		
신청서 접수	학교→재단	· 장학생 추천 신청서류 제출
↓		
장학생 선정·지원·관리	재단	·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및 사후관리 등
↓		
사업결과 보고	재단→교육부	· 사업운영결과 보고 제출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06,079	-	106,079	106,079	106,079	100.0	-	-
2023	115,386	-	115,386	115,386	115,386	100.0	-	-
2024	32,413	-	32,413	32,413	32,413	100.0	-	-
2025	25,825	-	25,825	25,825	25,825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① 이월사유: 해당 없음 ② 불용사유: 715백만원 - 유사 교육지원 프로그램 통합 운영(증서수여식, 멘토링 캠프)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행사 진행으로 예산 절감 - 계속 장학생 자격점검 강화(연 1회→2회, 심사기준 강화)에 따른 지원중단 인원 증가 및 자격유예자(대학교 휴학생) 증가로 인한 잔여 예산 발생
2023	① 이월사유: 7백만원 - (정책연구) 용역 기간이 '23. 8월 ~ '24. 1월로 용역 이행 결과에 따른 잔금 지급을 위해 차년도 예산 이월 불가피 ② 불용사유: 888백만원 - 장학생 자격유예자(대학교 휴학생 및 재수생) 증가 및 장학생 자격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카드사용 모니터링 확대 등)에 따른 잔여 예산 발생
2024	① 이월사유: 해당 없음 ② 불용사유: 434백만원 - 계속장학생의 휴학 등에 따른 학적변동으로 잔여 예산 발생
2025	① 이월사유: 해당 없음 ② 불용사유: 1,343백만원 - 계속장학생의 휴학 등에 따른 학적변동으로 잔여 예산 발생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33) 청소년자립생활관 지원 (6374-35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80	082
명칭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300	6374	354
명칭	복권기금운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자립생활관 지원	청소년자립생활관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청소년자립 생활관 지원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사업시행주체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청소년자립생활관 지원	-	876	876	210	210	△666	76.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876	876	876	876 [876]	876	876 [876]
· 청소년자립생활관 및 청소년창업비전 센터 시설공사비	-	-	-	-	-	666	666	666	666 [666]	666	666 [666]
· 청소년자립생활관 및 청소년창업비전 센터 차량교체비	-	-	-	-	-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청소년자립생활관 지원)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출원생 자립지원기관 시설 보수 및 노후차량 교체를 통해 위기·소의 청소년의 성공적 사회복귀 및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 필요
- (청소년자립생활관 및 청소년창업비전센터 시설공사) 청소년자립생활관 및 청소년창업비전센터는 소년원 출원생 등 위기청소년에게 무료숙식제공, 학업 및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시설로, 재난 대비 등 입주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시설 보수 등의 환경개선
- (청소년자립생활관 및 청소년창업비전센터 차량교체) 청소년자립생활관 및 청소년창업비전센터에서 입주생의 교육 및 자격증 취득, 병원진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량 노후화로 입주생 안전을 위해 차량 교체
 - ※ 대부분 경유 및 5등급 차량으로 도심 중심가 진입이 불가하므로, 환경평가 개선 차량으로 교체 필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년보호협회) 제1항 및 제3항
 - (1항) 보호소년등을 선도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감독하에 소년 선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되는 소년보호협회를 둘 수 있다.
 - (3항) 국가는 소년보호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자립기반조성)
 - (77조) 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직업능력 향상과 성공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창업 교육, 지원재단 설립 및 자립생활관 운영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3항 및 3호
 - (3항)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 (3호)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② 추진경위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소외청소년자립지원(청소년자립생활관 및 청소년창업비전센터 차량교체) 사업 추진을 위한 복권기금 사용 신청
- ‘소외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추진현황
 - 2009년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 건립 및 전국청소년자립생활관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 2010년 강원청소년자립생활관 건립
 - 2011년 의왕청소년자립생활관 증·개축, 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 증축,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 리모델링
 - 2012년 광주청소년자립생활관 증·개축, 대구청소년자립생활관 리모델링
 - 2014년 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 증·개축
 - 2016년 부산·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 증·개축
 - 2018년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건물 매입 및 환경조성
 - 2022년-2023년 대구청소년자립생활관 증·개축
 - 2025년 노후 청소년자립생활관 개보수 및 청소년창업비전센터 입주생 및 교육생 이용 차량교체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484	-	-	876	21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 사업 수혜자 : 소년원 출원생 등 위기청소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청소년 자립생활관 및 청소년 창업비전 센터 차량교체	보조	(재)한국 소년보호 협회)	210	100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3항, 제3호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년보호협회)제1항 및 제3항 ① 보호소년등을 선도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감독하에 소년 선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되는 소년보호협회를 둘 수 있다. ③ 국가는 소년보호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자립기반조성) - 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직업능력향상과 성공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창업보육, 지원재단 설립 및 자립생활관 운영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10백만원(차량 교체비): 청소년창업비전센터 5개소 × 4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표명: 재범률 (단위: %)	목표	-	-	-	4.47 미만	4.98 미만	▪ 기관별 3년 평균 재범률 기준 대비 환경개선 및 노후차량 교체 후 재범률 비교 <table><tr><td>구 분</td><td>재범률</td></tr><tr><td>'22</td><td>2.5%</td></tr><tr><td>'23</td><td>4.0%</td></tr><tr><td>'24</td><td>7.5%</td></tr><tr><td>3년 평균</td><td>4.7%</td></tr></table> ▪ 목표치 최근 3년 재범률 평균의 95%인 4.98%	구 분	재범률	'22	2.5%	'23	4.0%	'24	7.5%	3년 평균	4.7%	▪ 측정산식 <table><tr><td>기준치</td><td>평가기준</td><td>재범률</td><td>평가점수</td></tr><tr><td rowspan="6">4.7%</td><td>~ 95% 미만</td><td>4.98% 미만</td><td>100점</td></tr><tr><td>95%이상 ~ 100%미만</td><td>5.25% 미만</td><td>98점</td></tr><tr><td>95%이상 ~ 105%미만</td><td>5.51% 미만</td><td>96점</td></tr><tr><td>105%이상 ~ 110%미만</td><td>5.77% 미만</td><td>94점</td></tr><tr><td>110%이상</td><td>5.77% 이상</td><td>92점</td></tr><tr><td colspan="3">평가방법 - 2점 척도</td></tr></table>	기준치	평가기준	재범률	평가점수	4.7%	~ 95% 미만	4.98% 미만	100점	95%이상 ~ 100%미만	5.25% 미만	98점	95%이상 ~ 105%미만	5.51% 미만	96점	105%이상 ~ 110%미만	5.77% 미만	94점	110%이상	5.77% 이상	92점	평가방법 - 2점 척도			한국소년 보호협회 통계자료
	구 분	재범률																																								
	'22	2.5%																																								
	'23	4.0%																																								
	'24	7.5%																																								
3년 평균	4.7%																																									
기준치	평가기준	재범률	평가점수																																							
4.7%	~ 95% 미만	4.98% 미만	100점																																							
	95%이상 ~ 100%미만	5.25% 미만	98점																																							
	95%이상 ~ 105%미만	5.51% 미만	96점																																							
	105%이상 ~ 110%미만	5.77% 미만	94점																																							
	110%이상	5.77% 이상	92점																																							
	평가방법 - 2점 척도																																									
실적	100점	100점	92점	100점	-																																					
달성도		-	-	4.25	-																																					
지표명: 사회정착 지원율 (단위: %)	목표	-	-	-	-	134% 이상	▪ 기관별 3년 평균 사회정착지원율 기준 대비 차량지원 후 사회정착지원율 비교 <table><tr><td>구 분</td><td>사회정착 지원율</td></tr><tr><td>'23</td><td>116%</td></tr><tr><td>'24</td><td>144%</td></tr><tr><td>'25</td><td>124%</td></tr><tr><td>3년 평균</td><td>128%</td></tr></table> ▪ 목표치 최근 3년 사회정착 지원율 평균의 105%인 134%	구 분	사회정착 지원율	'23	116%	'24	144%	'25	124%	3년 평균	128%	▪ 측정산식 - 사회정착지원 달성도(건) = (A* / B**) * A: 연간 사회정착지원 실적(취업, 자격증 취득, 검정고시, 상급 학교 진학) 1) 취업: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 고정적 근무형태에 취업한 자 2) 자격증 취득: 국가 및 민간 자격증 취득자 3) 검정고시: 중·고입 검정고시 합격자 4) 상급학교 진학: 중·고등학교 및 대학진학자 **B: 청소년자립생활관(8개) 및 청소년창업비전센터(2개) 이월인원 및 신입주인원	한국소년 보호협회 통계자료																							
	구 분	사회정착 지원율																																								
	'23	116%																																								
	'24	144%																																								
	'25	124%																																								
3년 평균	128%																																									
실적	-	-	-	-	-																																					
달성도		-	-	-	-																																					

[illegible]

- 평가방법
- 2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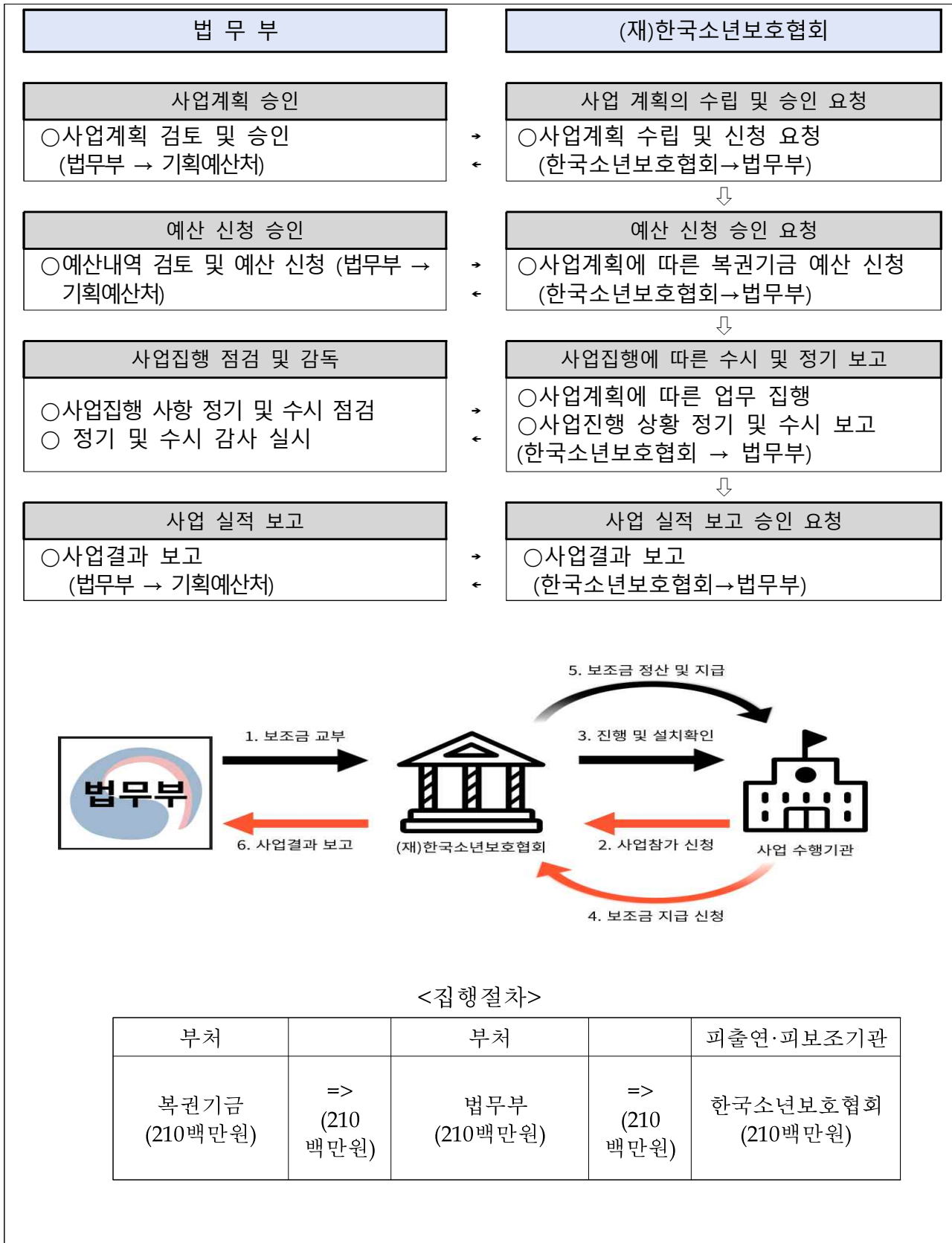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노후관용 차량 교체를 통한 사회정착지원 및 자립기반 조성 프로그램 활성화로 사회정착지원을 3년평균 128%보다 상향 기대

구분	2023	2024	2025	2026 목표
사회정착지원율	116%	144%	124%	134%

-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 *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1) 국회지적 국회(22, 23, 24결산) 지적

- 국회(법사위, 22예산)지적 - 출원생 자립지원기관 운영실적 제고 필요
- 국회(법사위, 23예산)지적 - 운영실적이 부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개선대책 마련 필요
- 국회(법사위, 24예산)지적 - 청소년자립지원기관의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률 증가 필요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생활관 등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복권기금 신청
- 시설 규모 및 인력 대비 과도하게 편성된 자립생활관 및 창업비전센터 입주정원을 재조정
- 소년원 등 관계기관 대상 홍보 강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484	-	1,484	-	1,484	1,484	100.0	100.0
2023	-	-	-	-	-	-	-	-
2024	-	-	-	-	-	-	-	-
2025	876	-	876	-	876	876	100.0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계획변경 및 이월 사유 최종 사업수행기관(한국소년보호협회)의 책임있는 관리자인 상임이사의 연이은 사임으로 업무 공백 발생 또한, 한국 소년 보호협회 담당자의 증개축 업무 관련 전문성 및 이해 부족으로 관할청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등 집행 지연 ※ '22. 11. 건축 관련 전문성 갖춘 행정사를 활용하고, 협회 본부와 대구 생활관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여 실집행을 가속화하여 '23.11월 실집행 완료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100% 집행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3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지원 (6440 - 3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400	6440	311
명칭	복권기금운영(보훈복지법정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지원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국가보훈부 보훈복지의료국 보훈의료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한국보훈 복지의료 공단지원	70,138	80,127	80,127	87,519	87,519	7,392	9.2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지원	70,138	70,138	70,138	-	-	80,127	80,127	80,127	-	-	87,519
· 보훈의료서비스 선진화	14,254	28,241	28,241	-	-	28,771	28,771	28,771	-	-	41,552
· 보훈의료시설 인프라 강화	28,959	22,129	22,129	-	-	32,883	32,883	32,883	-	-	24,360
· 보훈복지서비스 향상 지원	15,451	19,768	19,768	-	-	18,473	18,473	18,473	-	-	21,60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보훈의료서비스 선진화 사업) 보훈병원의 노후 의료장비 교체와 첨단 의료장비 도입 등을 통해 보훈가족에게 적기에 최상의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
- (보훈의료시설 인프라 강화 사업) 보훈가족의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만성 복합질환 및 장기입원 수요 대비와 급성기-재활-요양의 질환별 맞춤형 진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최적의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진료시설 인프라를 구축
- (보훈복지서비스 향상지원 사업) 장애·노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보훈요양원에 입소해 계신 보훈가족에게 수준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망인과 보훈가족의 여가활동을 위한 휴양시설 이용지원, 무의탁(무주택) 보훈가족에게 거주지를 제공하는 보훈복지타운 운영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 제11호
- ② 추진경위 :
 - 1981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설립, 국가유공자 진료 수행
 - 2001. 1월 복권발행 근거 마련을 위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개정
 - 2001. 5월 플러스복권 발매 개시
 - '04년부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
 - 2004년 ~ 2010년 보훈병원 일반위탁진료비 지원사업, 복지시설운영비 지원사업, 제주국가유공자 휴양시설 건립사업, 국가유공자 특수질환(암) 진료비 사업 등 지원
 - 2011년 ~ 2012년 보훈대상자 의료서비스 선진화, 종합재활체육 지원, 주거복지서비스 지원
 - 2013년 ~ 현재 보훈대상자 의료·복지서비스 선진화 지원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4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5,253	58,664	70,138	80,127	87,519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사업 수혜자 :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 지역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지원	보조	보훈복지 의료공단	87,519	6.42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

3) '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4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및 자금소요 평가 결과 등에 따른 가감조정, '24년 법정배분 정산 등으로 복권수익금 87,519백만원(①+②+③) 배분

① 기본배분액: '26년 복권수익금*(3,277,874백만원)의 35% 중 6.428%인 **73,746백만원**

* 복권수익금 = 복권판매수입 - 복권판매사업비 -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② 가감조정 : **+14,061백만원**

③ '24년 법정배분액 정산금* : **△288백만원**

* 정산금 = ('24년 결산상 복권수익금 - 기 배분한 복권수익금) × 35% × '24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배분비율(가감조정 반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보훈의료서비스 선진화) 보훈대상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의료장비 도입, 유지보수, 노후 의료장비의 교체 및 첨단 의료장비의 지속 도입 등

- 매년 200억원 상당의 예산범위 내에서 노후교체-보충-신규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장비 도입

· (노후) 내용연수(7년) 초과된 의료장비 중 잦은 고장에 따른 유지비 상승, 정확성 저하 등 평가기준에 의해 교체가 필요한 장비

· (보충) 환자 및 검사 건수 증가에 따른 대기해소 위해 추가 도입 필요한 장비

· (신규) 보훈대상자 맞춤 진료 위해 고난도 진료·수술이 가능한 첨단 장비

· (유지보수비) 전국 6개 보훈병원 의료장비의 적절한 컨디션 유지

· (의료전산) 의료전산시스템 개선을 통한 환자 편의 개선 및 환자정보 보호

○ (보훈의료시설 인프라 강화)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각 종 의료인프라 구축 및 시설 개보수 지원

- (시설재배치) 질환별 연계 배치 및 환자 중심 맞춤형 시설 재배치를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및 공간자원 활용 극대화

- (중증·필수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필수의료 기반 개선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보훈복지서비스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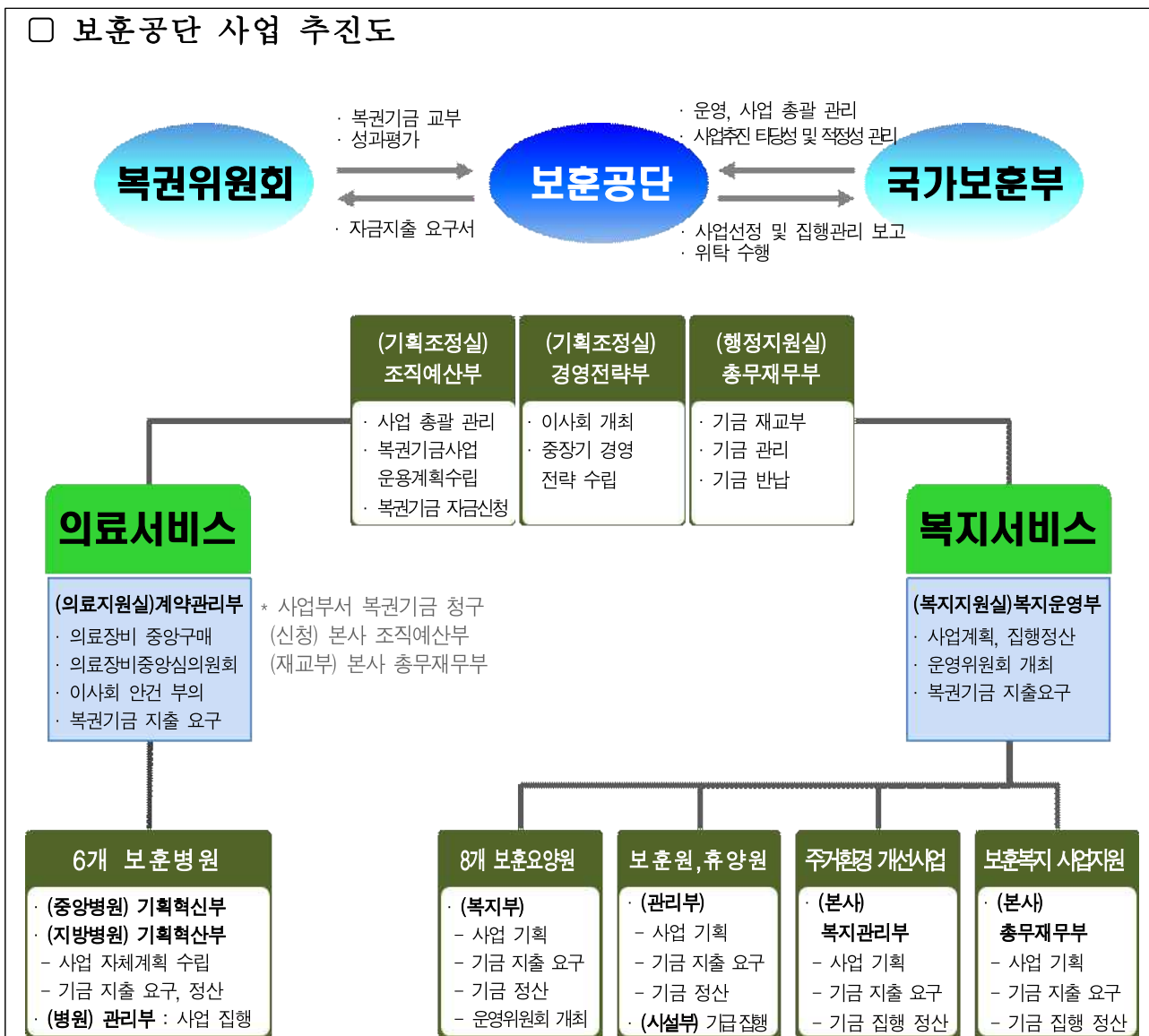
- 보훈대상자 요양서비스 확대를 위한 시설 확충 및 서비스 질 향상 지속
- 주거개선 신규 대상자 발굴 지원 및 사업 지원액 확대를 통한 사업의 효과성 제고
- 여가 시설 개보수 및 이용료 감면으로 안락한 여가생활 영위토록 지속 지원
- 국가유공자 단체 행사 및 위문비용 등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보훈공단 사업 추진도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					
2022	55,253	-	55,253	55,253	55,253	100.0	-	-
2023	58,664	-	58,664	58,664	58,664	100.0	-	-
2024	70,138	-	70,138	70,138	70,138	100.0	-	-
2025	80,127	-	80,127	80,127	80,127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사 업 명						
(35)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 (6541-31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080	089
명칭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500	6541	312
명칭	복권기금운영 (사회복지법정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사업시행주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팀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	41,697	47,401	47,401	47,386	47,386	△15	△0.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 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당초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1,697	41,697	41,697 [40,441]	-	1,256	47,401	47,401	47,401	47,401 [46,298]	-	47,401 [46,298]	-	-	47,386
· 저소득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23,397	23,397	23,597 [22,644]	-	753	22,336	22,771	22,771	22,771 [22,220]	-	22,771 [22,220]	-	-	20,302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가족기능 강화사업	3,000	3,000	3,000 [2,838]	-	162	4,000	2,994	2,994	2,994 [2,768]	-	2,994 [2,768]	-	-	3,000
· 경계선 지능 아동 (느린학습자)의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	11,650	11,650	11,650 [11,399]	-	251	14,000	14,000	14,000	14,000 [13,750]	-	14,000 [13,750]	-	-	20,584
·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안전강화를 위한 환경개선 지원사업	3,650	3,650	3,450 [3,560]	-	90	3,500	3,652	3,652	3,652 [3,648]	-	3,652 [3,648]	-	-	3,500
· 장애인 아동 편의를 위한 기능보강	-	-	-	-	-	3,565	3,984	3,984	3,984 [3,912]	-	3,984 [3,912]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저소득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 저소득층 야간 및 돌봄공백 기간 방임 아동·청소년에 대한 통합 보호
 - 야간 및 돌봄공백 기간 방임 아동·청소년 학습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
 - 저소득층 및 취업 취약계층 대상 야간보호교사 채용 및 지원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가족기능 강화사업
 - 아동 지원사업 : 기본생활, 심리정서, 발달 지원, 사회적 관계 지원 등

- 가족 지원사업 : 가족기능지원, 보호양육지원, 경제적 지원 등
-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 자원 연계,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

◦ 경계선 지능 아동(느린학습자)의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

- 학습 및 적응 속도가 느린 경계선 지능 아동(느린학습자)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아동(인지, 학습, 사회적 영역), 가정(상담 및 코칭, 자녀의 특성 이해 및 양육방법 교육), 학교(교사, 친구 대상 인식개선 프로그램)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여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안전강화를 위한 환경개선 지원사업

- 석면제거 및 철거를 통한 환경개선 지원으로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 도모
- 전국 아동·청소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석면 진단, 보수, 해체, 제거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 제9호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② 추진경위

- 2004년부터 「복권 및 복권기금법」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 이혼가정, 한부모가정,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야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급증 등으로 인한 야간 방임우려 아동·청소년 보호의 필요성 증가로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을 2006년부터 시행함
- 급증하는 재학대 사례에 비해 현장의 지속적인 전문서비스(사례관리, 모니터링, 사후관리 등) 제공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가족지원 및 심리정서지원, 학대 피해아동 지원 등을 위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가족기능 강화사업’을 2017년부터 시행함

- 평균 지능 대비 낮은 인지 기능으로 학업·또래관계 등에서 어려움이 있으나,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소외된 경계선 지능아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아동의 인지·학습능력 향상, 정서 안정 및 자신감·사회성 향상을 위해 ‘경계선 지능 아동(느린학습자)의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을 2020년부터 시행함
-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석면’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이용아동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 한국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아동·청소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석면진단, 석면 제거 및 보강을 지원하는 ‘저소득 아동·청소년 안전강화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을 2022년부터 지원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0,082	47,205	41,697	47,401	47,38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업 수혜자 : 중위소득 100%이하 가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복권기금	보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47,386	법정배분금 총액의 4.28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 1항 제9호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4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및 자금소요 평가 결과 등에 따른 가감조정, '24년 법정배분 정산 등으로 복권수익금 47,386백만원(①+②+③) 배분

① 기본배분액: '25년 복권수익금*(3,277,874백만원)의 35% 중 4.286%인 **49,171백만원**

* 복권수익금 = 복권판매수입 - 복권판매사업비 -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② 가감조정 : **△1,614백만원**

③ '24년 법정배분액 정산금* : **△171백만원**

* 정산금 = ('24년 결산상 복권수익금 - 기 배분한 복권수익금) × 35% × '24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비율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야간보호사업 : 343개소 참여 · 저소득 일자리 창출자 수 1,227명 · 가족기능 강화사업 참여기관 : 30개소 (아동, 행위자, 가족구성원 전체 3,335명) · 경계선 지능아동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 참여기관 : 13개소 (아동, 보호자 2,207명 참여, 학교 및 사회복지관 지원 영역 확대) ·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안전강화를 위한 환경개선 지원사업 : 100개소 공사 진행 완료
2023	· 야간보호사업 : 349개소 참여 · 가족기능 강화사업 참여기관 : 19개소 · 경계선 지능아동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 참여기관 : 11개 기관 (아동, 보호자 참여자 2,261명) ·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안전강화를 위한 환경개선 지원사업 76개소 공사 진행중완료

2024	· 야간보호사업 : 291개소 참여 · 가족기능 강화사업 참여기관 : 25개소 · 경계선 지능아동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 참여기관 : 12개 기관 (지역동센터 400개소, 사회복지관 60개소, 학교 40개교 지원中) ·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안전강화를 위한 환경개선 지원사업 78개소 공사 진행중 (8월 중 추가 선정 예정)
2025	· 야간보호사업 : 196개소 참여 · 가족기능 강화사업 참여기관 : 25개소 (576가정, 6,948회 서비스 제공) · 경계선 지능아동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 참여기관 : 16개소 (지역아동센터 460개소, 사회복지관 61개소, 초등학교 37개교, 중학교 23개교 지원中) ·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안전강화를 위한 환경개선 지원사업 74개소 선정 (지역아동센터 70개소, 아동양육시설4개소) · 장애인 리프트 차량 지원 : 84개소 지원 완료 및 실시간 관제서비스 시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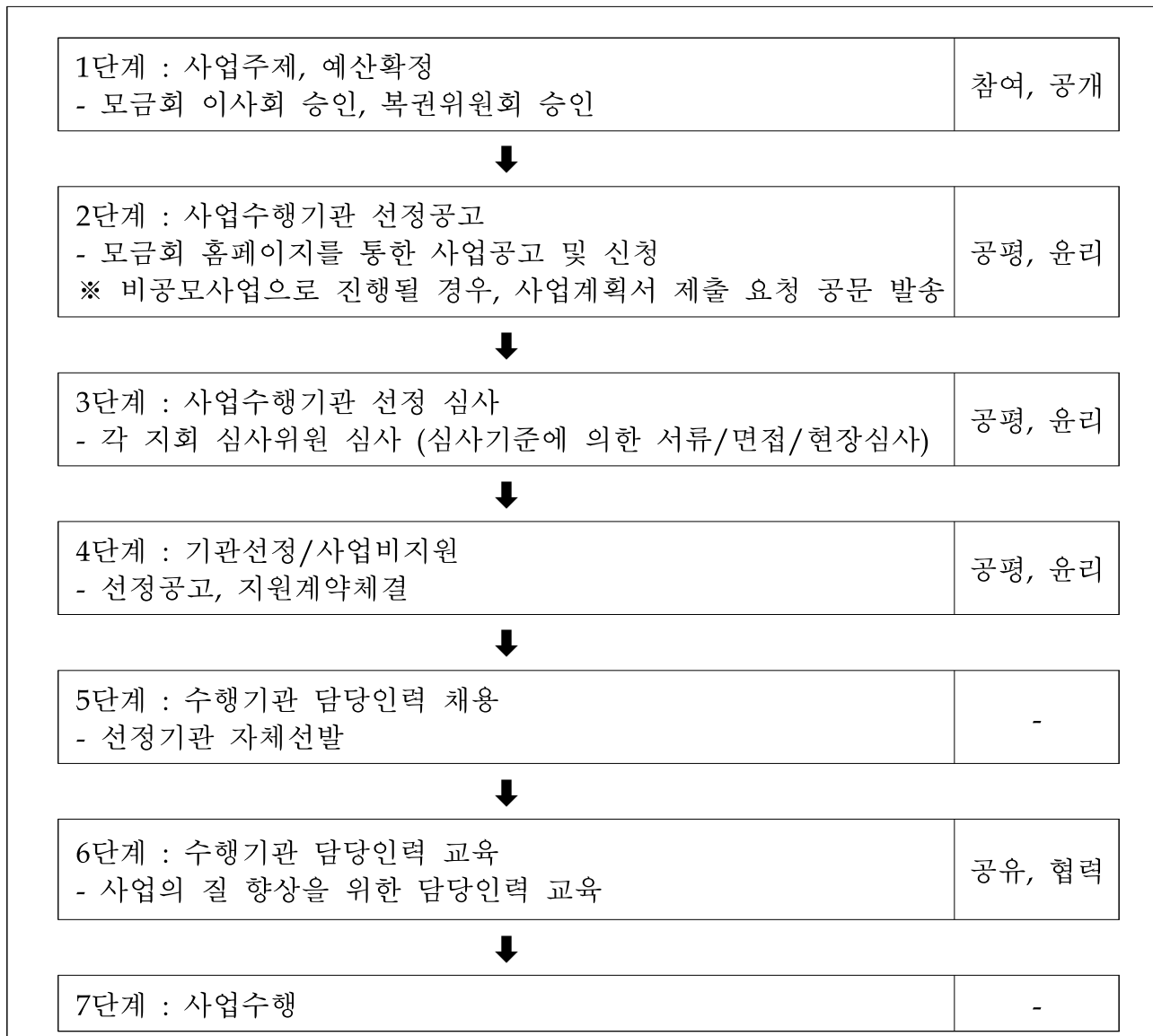
- 저소득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 야간보호 200개소, 돌봄강화(방학기간 및 틈새기간) 1,100개소 지원을 통한 약 26,000여 아동 청소년 야간안전 보호 및 건강한 성장 지원
 - 아동·청소년 야간보호를 통한 저소득 가정 보호자의 근로생활지원
 - 아동 인구수 감소 및 정부 돌봄 정책 확대에 따라 단계적 일몰 진행 예정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가족기능 강화사업
 -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및 가족기능 회복
 - 아동 재학대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재학대 위험수준 감소
 - 부모양육 스트레스 완화 및 부모역량 강화를 통해 양육 스트레스 지수 10% 감소
- 경계선 지능 아동(느린학습자)의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
 - 점차적 사업 확대를 통해 경계선 지능 아동에 한정되지 않고, 의심아동 및 일상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조기개입을 통해 학교 적응도 향상
 - 도서·산간 및 농어촌 등 교육·복지 사각지대 아동 발굴을 통해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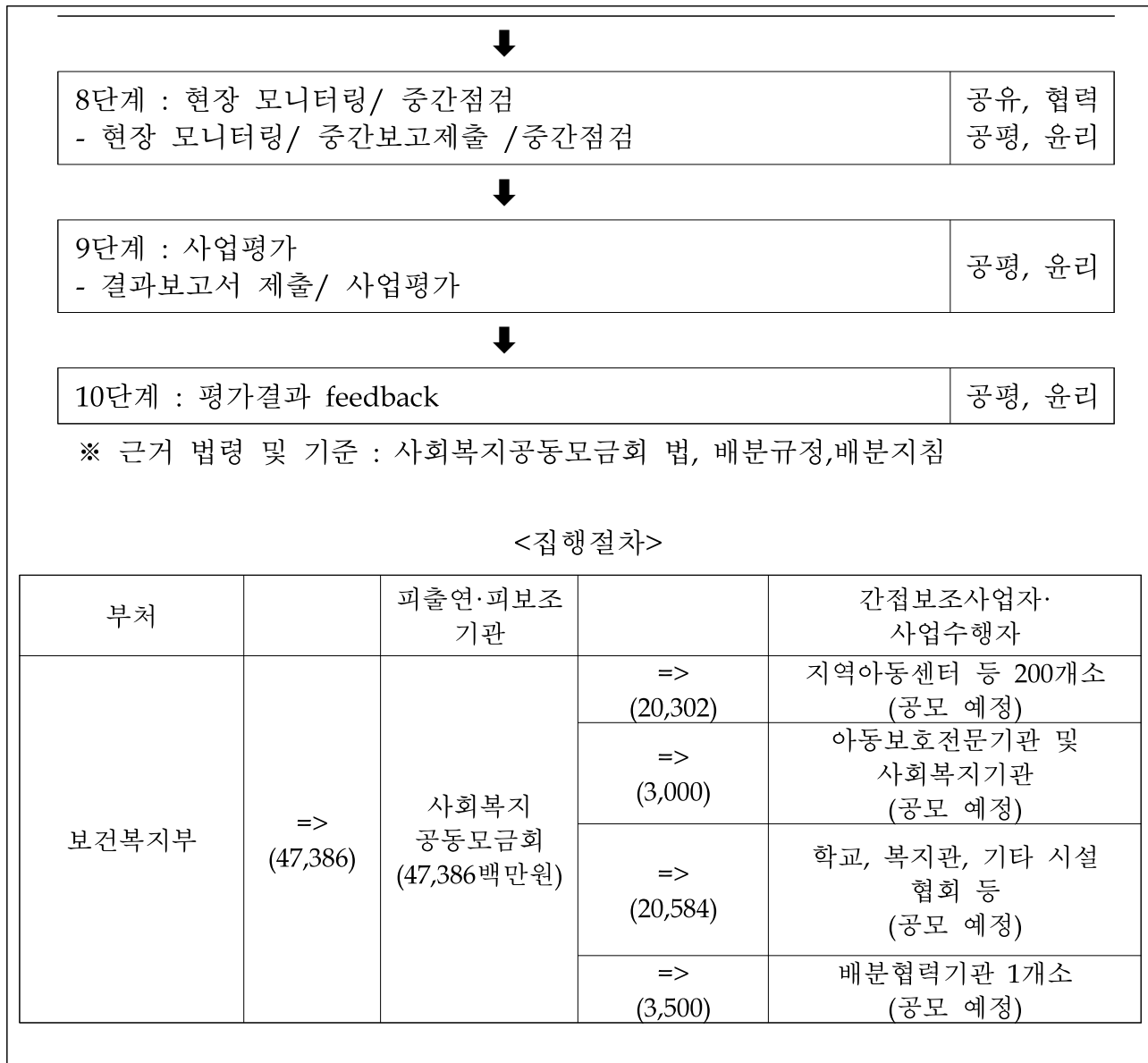
-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안전강화를 위한 환경개선 지원사업
 - 2025년 석면안전관리법 전면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석면 조사 및 공사 수요를 파악하여 석면 제거 공사 제공을 통해 아동 안전 확보
 - 석면 제거 외 노후 전기·가스 시설 및 위생 취약 공간 보수 지원 확대를 통해 아동 안전사고 발생률 감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복권위원회 사업성과 평가결과]				
연도	2021	2022	2023	2024
야간보호사업	82.04 (우수)	81.96 (우수)	84.81 (우수)	81.26 (우수)
가족기능 강화사업	79.61 (보통)	82.84 (우수)	84.28 (우수)	82.86 (우수)
경계선 지능아동 지원사업	76.96 (보통)	78.66 (보통)	84.27 (우수)	83.96 (우수)
환경개선 사업 (석면 해체 및 보수)	-	73.25 (보통)	78.48 (보통)	76.75 (보통)

○ 평가결과 : 우수 등급(법정배분사업).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40,082	40,082	40,082	-	40,082	40,082	100.0	100.0	-	-
2023	47,205	47,205	47,205	-	47,205	47,205	100.0	100.0	-	-
2024	41,697	41,697	41,697	-	41,697	41,697	100.0	100.0	-	-
2025	47,401	47,401	47,401	-	47,401	47,401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야간보호사업 공모 잔액, 사업포기, 예산절감, 퇴직금 정책 변경 등에 따른 잔액 1,245백만원 - 가족기능강화사업 수행기관 당해연도 반납금 68백만원 - 코로나19로 인해 경계선 지능아동 지원사업 공백기간 발생 등 639백만원 - 환경개선 지원사업 석면 해체 공사 불가 등에 따른 사업포기 446백만원
2023	- 야간보호사업 입찰 및 공모 잔액, 사업포기 등에 따른 잔액 3,113백만원 - 가족기능강화사업 특정지역 아동학대 피해 접수 감소에 따른 잔액 191백만원 - 경계선 지능아동 지원사업 아동 및 현장교사 중도 이탈 등 사업 공백 발생 등 460백만원 - 석면 해체 참여기관 중도 사업 포기(건물주 미승인 등)에 따른 잔액 210백만원
2024	- 늘봄학교 확대 및 참여아동 감소에 따른 중도 포기 기관 발생 753백만원 - 아동학대 접수 건 중 본 사업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율 감소 162백만원 - 경계선 지능아동 지원사업 봉사자 활용 및 외부자원 활용에 따른 절감액 251백만원 - 환경개선사업 하반기 공사잔액 대비 예산 부족에 따른 공사 미진행 90백만원
2025	- 공모 선정 이후 또는 사업 중도 포기 등에 따른 잔여액 발생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36)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지원 (6642-31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복권기금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100	102
명칭					농림수산	임업산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600	6642	313
명칭	복권기금운영(산림환경법정지원)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지원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산림환경기능 증진자금 지원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소관부처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예산운영팀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B-A)/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산림환경기능 증진자금 지원	72,967	77,528	77,528	80,183	80,183	2,655	3.4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 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당초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2,967	72,967 [78,064]	72,967 [69,684]	- [7,254]	- [1,126]	77,528	77,528	77,528 [84,782]	77,528 [70,320]	77,528 [77,528]	77,528 [63,520]	- [7,210]	- [7,252]	80,183
· 취약지역 녹색인 프라 확충사업	41,165	41,165 [46,262]	41,165 [38,159]	- [7,254]	- [849]	41,507	41,507	41,507 [48,761]	41,507 [37,397]	41,507 [41,507]	41,507 [30,597]	- [7,210]	- [4,154]	39,319
· 취약계층 숲체험· 교육지원사업	31,802	31,802 [31,802]	31,802 [31,525]	- [31,525]	- [277]	36,021	36,021	36,021 [36,021]	36,021 [32,923]	36,021 [36,021]	36,021 [32,923]	- [3,098]	- [3,098]	40,86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 사업) 사회복지시설에 수목식재 및 목재활용 생활환경 개선, 무장애나눔길 등 산림체험 활동시설 조성으로 취약계층의 산림체험 공간 불평등 해소
- (취약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 취약계층(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청소년, 노약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정서안정과 심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 제10호

①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 기능증진자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9호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 기능증진자금: 100분의 5.846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항

제58조(녹색자금) ④ 녹색자금은 산림의 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사업의 조성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2. 공해방지와 경관 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림 조성사업
3.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운영 및 교육·홍보사업
4. 수목원·휴양림·수목장림의 조성·운영사업
8. 산림복지진흥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추진경위

- ('07년) “생활환경림 조성사업” 및 “녹색체험 교육사업” 추진
 - ('08년) “사회복지시설 녹색복지공간 조성” 및 “숲체험·교육사업” 추진
 - ('14년) 사업명을 “산림환경기능증진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
 - ('15년) '24년까지 5개 권역에 “체험교육나눔숲” 조성계획 녹색자금운용심의회에 보고하여 추진
 - ('16년) “무장애나눔길 조성” 실시
 - ('17년) “지역사회나눔숲” 사업 폐지
 - ('18년) “수목장림나눔숲 조성·지원” 추진
 - ('19년) “산림환경기능증진사업”을 “나눔숲 조성(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과 “숲체험·교육(소외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의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 ('23년) 용어순화(「국어기본법」 개정, '21.12월)를 위한 내역사업 명칭 변경
- * (당초) 소외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 → (변경) 취약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4~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9,057	72,576	72,967	77,528	80,18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참여기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산림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등(보훈·유공자, 장애인, 노인, 영아, 청소년,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산림환경기능 증진자금지원	보조	한국산림 복지진흥원	80,183	법정 배분금 5.84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4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및 자금소요 평가 결과 등에 따른 가감조정, '24년 법정배분 정산 등으로 복권수익금 80,183백만원(①+②+③) 배분

① 기본배분액: '26년 복권수익금*(3,277,874백만원)의 35% 중 5.846%인 **67,069백만원**

* 복권수익금 = 복권판매수입 - 복권판매사업비 -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② 가감조정 : **+13,414백만원**

③ '24년 법정배분액 정산금* : **△300백만원**

* 정산금 = ('24년 결산상 복권수익금 - 기 배분한 복권수익금) × 35% × '24년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배분비율(가감조정 반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취약계층 1인당 녹지면적 8.85㎡/명, 숲체험·교육 수혜인원 626천명
2023	취약계층 1인당 녹지면적 9.87㎡/명, 숲체험·교육 수혜인원 526천명
2024	취약계층 1인당 녹지면적 10.75㎡/명, 숲체험·교육 수혜인원 613천명
2025	취약계층 1인당 녹지면적 11.60㎡/명, 숲체험·교육 수혜인원 620천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조성사업)

- 취약계층이 거주·이용하는 복지시설 등에 수목식재 또는 실내 공간(바닥·벽) 등에 목재를 활용하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신체·정신 건강 증진에 기여
-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보행약자층도 안전하게 숲을 보행하거나 숲을 활용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체험활동 시설을 설치하여 산림복지 활성화에 기여
- * '29년까지 소외계층 1인당 녹지면적을 일반도심 대비 80% 수준까지 확대, 무장애 나눔길 매년 20km 이상 조성으로 '29년 236.8km 수준까지 확대

- (취약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및 유아·청소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산림에 대한 “교육”과 “체험”을 통한 정서적 안정 및 신체적 건강 증진 도모
- 기존에 조성된 복지시설나눔숲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등 공동체 의식함양에 기여

* 지속적인 수혜확대 및 수혜대상 발굴을 통해 '29년까지 숲체험·교육 취약계층 수혜 집중도 93.6% 이상 달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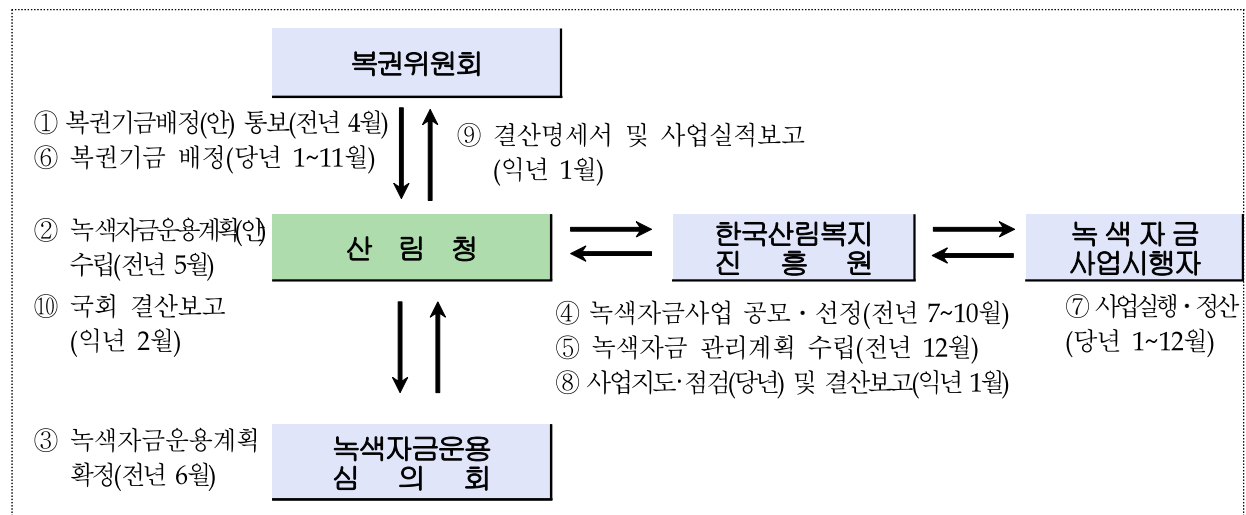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가. 녹색자금사업 추진체계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녹색자금 운용심의회 개최	산림청	◦ 녹색자금운용계획 확정·통보
② 공모사업 공고	진흥원	◦ 공모사업 공고 → 공모설명회 개최 → 공모사업 신청
③ 공모사업 심사 및 사업시행자 선정	진흥원 산림청	◦ 심사위원회 구성 → 녹색자금운용심의회 의결 → 사업시행자 확정 통보
④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시행자, 진흥원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시행자) → 검토확정(진흥원)
⑤ 사업계획서 확정 통보	진흥원	◦ 사업계획서 확정 통보(진흥원 → 사업시행자)
⑥ 복권기금 사업추진	사업시행자	◦ 사업자금 신청 및 배정
⑦ 사업실적 정산·평가	진흥원	◦ 사업실적 정산·평가(진흥원 → 사업시행자)
⑧ 복권기금 국회결산	산림청	◦ 성과평가 보고서 작성(진흥원 → 복권위원회) ◦ 국회결산 보고(진흥원 → 산림청 → 국회)

나. 녹색자금사업 시행체계



8) 각종 평가

1) 국회(상임위, 23결산) 지적

(지적) 녹색자금의 소관부처 및 운용·관리부처의 불일치 해소 논의 필요 등

(조치)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녹색산림기금' 신설 검토

- 「산림자원법」 개정안 마련 및 개정 추진(~'25.下)

2) 대외공개 평가

○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사업 '24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25.4월) 결과

- 89개 법정배분사업 중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89.05점, 우수),
소외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 (90.09점, 우수) 달성

- ('18) 3위/58개 사업 → ('19) 1위(나눔숲·나눔길), 5위(숲체험·교육)/66개 사업

→ ('20) 2위(취약지역 녹색인프라 조성), 4위(소외계층 숲체험·교육 지원)/61개 사업

→ ('21) 우수(취약지역 녹색인프라 조성), 우수(소외계층 숲체험·교육 지원)/71개 사업

→ ('22) 매우우수(취약지역 녹색인프라 조성), 매우우수(소외계층 숲체험·교육 지원)/92개 사업

→ ('23) 우수(취약지역 녹색인프라 조성), 우수(소외계층 숲체험·교육 지원)/95개 사업

→ ('24) 우수(취약지역 녹색인프라 조성), 우수(소외계층 숲체험·교육 지원)/89개 사업

* '19년 평가부터 세부 내역사업(취약지역 녹색인프라, 숲체험·교육지원) 구분하여 평가 실시

* '23년 평가부터 타 회계로 사업이 이관되도 평가등급 활용 가능토록 5단계 → 3단계 조정

3) 자체평가: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69,057	-	69,057	-	69,057	69,057	100.0	100.0	-	-
2023	72,576	-	72,576	-	72,576	72,576	100.0	100.0	-	-
2024	72,967	-	72,967	-	72,967	72,967	100.0	100.0	-	-
2025	77,528	-	77,528	-	77,528	77,528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